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2020. 04

서 천 군

제 출 문

서천군수 귀하

귀 군부터 의뢰받은 『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 관한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04.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 사 장 임 승 택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
1.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 3
3. 연구의 방법 ····· 5
제2절 연구의 수행절차 ····· 6

제2장 현황 분석 ····· 7
제1절 서천군 일반현황 ····· 9
1. 자연환경 ····· 9
2. 인문사회 환경 ····· 13
제2절 문화예술창작공간 현황 ····· 16

제3장 관련 법규 검토 ····· 17
제1절 법률 및 지침검토 ····· 1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19
2. 문화예술진흥법 ····· 22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 23
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30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 31
제2절 조례 검토 ····· 41
1.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41
2.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44

제4장 운영인원 산정 ····· 45
제1절 전국 생활문화시설 운영현황 검토 ····· 47
1.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 현황 ····· 47
2. 지역별 운영인력 분석 ····· 48
3. 운영방식에 따른 운영인력 분석 ····· 49
제2절 유사시설 사례 검토 ····· 50
1. 문화예술창작공간 ····· 50
2. 생활문화센터 ····· 58
제3절 운영인력 산정 ····· 63
1.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검토 결과 ····· 63
2, 유사시설 사례 검토 결과 ····· 63
3. 직무분석을 통한 인원 산정 ····· 65
4. 적정 운영인력 산정결과 ····· 66

제5장 위탁비용 산정 ····· 67
제1절 원가 산정 기준 ····· 69
1. 원가조사의 기본전제 ····· 69
2. 원가 구성 요소 ····· 69
제2절 위탁비용 산정 ····· 73
1. 총괄원가계산서 ····· 73
2. 세부 산정내역 ····· 74

※ 참고자료 ····· 93

표 목 차

[표 1-1]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현황 ····· 5
[표 1-2]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활용계획 ····· 5

[표 2-1] 서천군의 지리적 위치 ····· 9
[표 2-2] 서천군 면적 ····· 10
[표 2-3]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평균풍속 ····· 11
[표 2-4] 서천군 강수량 ····· 12
[표 2-5] 서천군 행정구역 ····· 13
[표 2-6] 서천군 읍·면별 세대 및 인구수 ····· 14
[표 2-7] 서천군 65세 이상 인구수 ····· 14
[표 2-8] 서천군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15
[표 2-9]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현황 ····· 16
[표 2-10] 문화예술창작공간 공간활용 계획 ····· 16

[표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 ····· 19
[표 3-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 20
[표 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 ····· 21
[표 3-4] 문화예술진흥법 ····· 22
[표 3-5]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 22
[표 3-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1) ····· 23
[표 3-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2) ····· 24
[표 3-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3) ····· 25
[표 3-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4) ····· 26
[표 3-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5) ····· 27
[표 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6) ····· 28
[표 3-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7) ····· 29
[표 3-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8) ····· 30
[표 3-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 30
[표 3-1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 ····· 31

[표 3-1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 ····· 32
[표 3-17]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3) ····· 33
[표 3-18]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4) ····· 34
[표 3-19]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5) ····· 35
[표 3-20]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6) ····· 36
[표 3-2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7) ····· 37
[표 3-2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8) ····· 38
[표 3-2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9) ····· 39
[표 3-2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0) ····· 40
[표 3-25]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1) ····· 41
[표 3-26]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2) ····· 42
[표 3-27]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3) ····· 43
[표 3-28]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44

[표 4-1] 지역별 운영인력 현황 ····· 47
[표 4-2] 운영인력 규모 및 지역별 분포 현황 ····· 48
[표 4-3] 지역별 운영인력 구성 ····· 48
[표 4-4] 운영별 운영인력 구성 ····· 49
[표 4-5] 운영유형별 운영인력 구성 ····· 49
[표 4-6]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시설개요 ····· 50
[표 4-7]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운영현황 ····· 51
[표 4-8]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시설개요 ····· 52
[표 4-9]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현황 ····· 53
[표 4-10] 서울 평화문화진지 시설개요 ····· 54
[표 4-11] 서울 평화문화진지 운영현황 ····· 55
[표 4-12]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시설개요 ····· 56
[표 4-13]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운영현황 ····· 57
[표 4-14] 당진 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 ····· 58
[표 4-15] 당진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 59
[표 4-16] 온양 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 ····· 59
[표 4-17] 온양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 60
[표 4-18] 청주 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 ····· 61

[표 4-19] 청주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 62
[표 4-20]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례 검토 결과 ····· 63
[표 4-21]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사례 검토 결과 ····· 64
[표 4-22] 면적비율 적용 검토 ····· 64
[표 4-23]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례 검토 결과 ····· 65
[표 4-24] 직무분석 검토 결과 ····· 66
[표 4-25] 적정 운영인력 산정결과 ····· 66

[표 5-1] 인건비 세부 산출기준 ····· 69
[표 5-2] 인적보험료 산출표 ····· 70
[표 5-3] 총괄원가계산서 ····· 73
[표 5-4] 인건비 집계표 ····· 74
[표 5-5] 인건비 단가표 ····· 74
[표 5-6] 총괄책임자 인건비 산출표 ····· 75
[표 5-7] 운영관리자 인건비 산출표 ····· 75
[표 5-8] 단기근로자 산출표 ····· 75
[표 5-9] 복리후생비 집계표 ····· 76
[표 5-10] 복리후생비 산출표 ····· 76
[표 5-11] 복리후생비 1인당 금액 집계표 ····· 76
[표 5-12] 인적보험료 집계표 ····· 77
[표 5-13] 문화예술창작공간 1인당 인적보험료 산출표 ····· 77
[표 5-14] 여비교통·통신비 집계표 ····· 78
[표 5-15] 여비교통비 산출표 ····· 78
[표 5-16] 경비배부율 산출표 ····· 78
[표 5-17] 소모·사무용품비 집계표 ····· 79
[표 5-18] 소모·사무용품 산출표 ····· 79
[표 5-19] 경비배부율 산출표 ····· 79
[표 5-20] 도서인쇄비 집계표 ····· 80
[표 5-21] 도서인쇄비 산출표 ····· 80
[표 5-22] 경비배부율 산출표 ····· 80
[표 5-23] 세금과공과 집계표 ····· 81
[표 5-24] 세금과공과 산출표 ····· 81

[표 5-25] 경비배부율 산출표 ····· 81
[표 5-26] 홍보비 집계표 ····· 82
[표 5-27] 홍보비 산출표 ····· 82
[표 5-28] 강사료 집계표 ····· 82
[표 5-29] 전력비 집계표 ····· 83
[표 5-30] 전력비 산출표 ····· 83
[표 5-31] 한국전력공사 일반용(갑)저압 요금표 ····· 84
[표 5-32] 평균 전력 사용량 산출표 ····· 84
[표 5-33] 전력소비량 집계표 ····· 84
[표 5-34] 전등 4종 135EA 추정 전력 소비량 ····· 85
[표 5-35] 냉난방설비, 실외기 추정 전력 소비량 ····· 85
[표 5-36] 용수비 집계표 ····· 86
[표 5-37] 상하수도 사용료 산출표 ····· 86
[표 5-38] 상수도 월 이용요금 산출표 ····· 86
[표 5-39] 하수도 월 이용요금 산출표 ····· 86
[표 5-40] 물 이용부담금 산출표 ····· 87
[표 5-41] 연별 평균 월 사용량 산출표 ····· 87
[표 5-42] 서천군 상하수도 이용료 산출표 ····· 87
[표 5-43] 2017년 상하수도 요금 ····· 87
[표 5-44] 2018년 상하수도 요금 ····· 88
[표 5-45] 2019년 상하수도 요금 ····· 88
[표 5-46] 보험료 산출표 ····· 89
[표 5-47] 지급수수료 집계표 ····· 89
[표 5-48] 사용료 산출표 ····· 90
[표 5-49] 사용료 집계표 ····· 90
[표 5-50] 시설별 면적 집계표 ····· 90
[표 5-51] 연면적당 평가금액 집계표 ····· 91
[표 5-52] 부가가치세 집계표 ····· 91

그 림 목 차

[그림 1-1] 과업 수행절차 ····· 6
[그림 2-1] 충청남도 서천군 ····· 10
[그림 2-2] 서천군 월별 평균기온 ····· 11
[그림 2-3] 서천군 월별 강수량 ····· 12
[그림 2-4] 서천군 행정구역 ····· 13
[그림 2-5]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 16
[그림 4-1]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전경 ····· 50
[그림 4-2]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주요시설 ····· 51
[그림 4-3] 대전 테미 예술창작센터 전경 ····· 52
[그림 4-4] 입주예술가 공고모집 및 실제 전시 모습 ····· 53
[그림 4-5] 서울 평화문화진지 전경 및 주요시설 ····· 54
[그림 4-6] 입주작가 모집 공고 및 오픈 스튜디오 ····· 55
[그림 4-7]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전경 ····· 56
[그림 4-8]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전시모습 ····· 57
[그림 4-9] 당진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동아리실 내부 ····· 58
[그림 4-10] 온양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 모습 ····· 60
[그림 4-11] 청주 동부창고 전경 ····· 61
[그림 4-12] 청주 동부창고 36동 내 책골목길 ····· 62
[그림 4-13] 청주 동부창고 36동 문화살롱 ····· 62

01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수행절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2020년 6월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창작공간』에 대한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에 따른 업무의 범위, 비용산정 등 제반 기준을 설정하고, 위탁계약에 따른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향후 정책적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2) 공간적 범위

○ 위 치 : 1차적 범위: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2차적 범위: 서천군 전역

○ 규 모 : 건축면적 - 1,005.3㎡,

연면적 - 980.10㎡

○ 공간구성 및 활용계획

3) 내용적 범위

○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현황분석

- 기초자료 조사
- 현황분석

○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산정

-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 산정
- 시설물 내의 운영·관리를 위한 적정 인력산정
- 청소, 경비 등의 기타 소요인력을 조사

○ 관련지침·법규 검토 및 유사시설 운영 사례분석

-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검토
- 인력 분석
- 프로그램 운영 등 분석

○ 문화예술창작공간의 민간위탁 사업비 산정

- 적정인력에 따른 인건비 산정
- 운영·관리 인력의 인건비성 경비 산정(복리후생비 등)
- 대상시설 제반운영에 따른 비용 항목을 파악하여 적정 비용을 산정

○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운영수입의 추정

-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액 추정

○ 민간위탁 수지분석에 따른 적정 위탁사업비 제시

4) 과업대상 시설물

[표 1-1]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현황

구분	내용
규모	▪ 지상 1층
주요시설	▪ 주요시설 : 공연장, 동아리연습실, 다목적홀 및 다목적쉼터, 푸드카페, 야외공연장
면적	▪ 연면적 980.10㎡, 건축면적 1,005.3㎡

[표 1-2]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활용계획

구 분	활용 계획	비 고
공연장 (107.35㎡)	○ 상시운영 ○ 연극, 음악 등 공연 프로그램 운영	무료
동아리연습실1 (58.86㎡)	○ 상시운영 ○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 회의실	무료
동아리연습실2 (58.32㎡)	○ 상시운영 ○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 회의실	무료
다목적홀 및 다목적 쉼터 (313.47㎡)	○ 상시운영 ○ 공연 발표회, 교육프로그램, 주민 모임공간으로 활용 ○ 무용, 연극 등 간단한 공연 연습 등 다수가 함께하는 동적활동을 위한 공간	무료
푸드카페 (113.4㎡)	○ 상시운영 ○ 주민 친목 도모 및 방문객을 위한 담소 공간 마련	유료
야외공연장 (168.48㎡)	○ 상시운영 ○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써 야외공연 및 동아리 활동 공간 조성	무료

3. 연구의 방법

○ 문헌 연구

○ 문화예술창작공간 관련 계획서, 내부자료 및 관련 계획 검토

○ 문화예술창작공간 관련 정부 정책 및 지침 검토

○ 현장조사

○ 사례조사

제2절 연구의 수행절차

1. 수행절차

○ 연구의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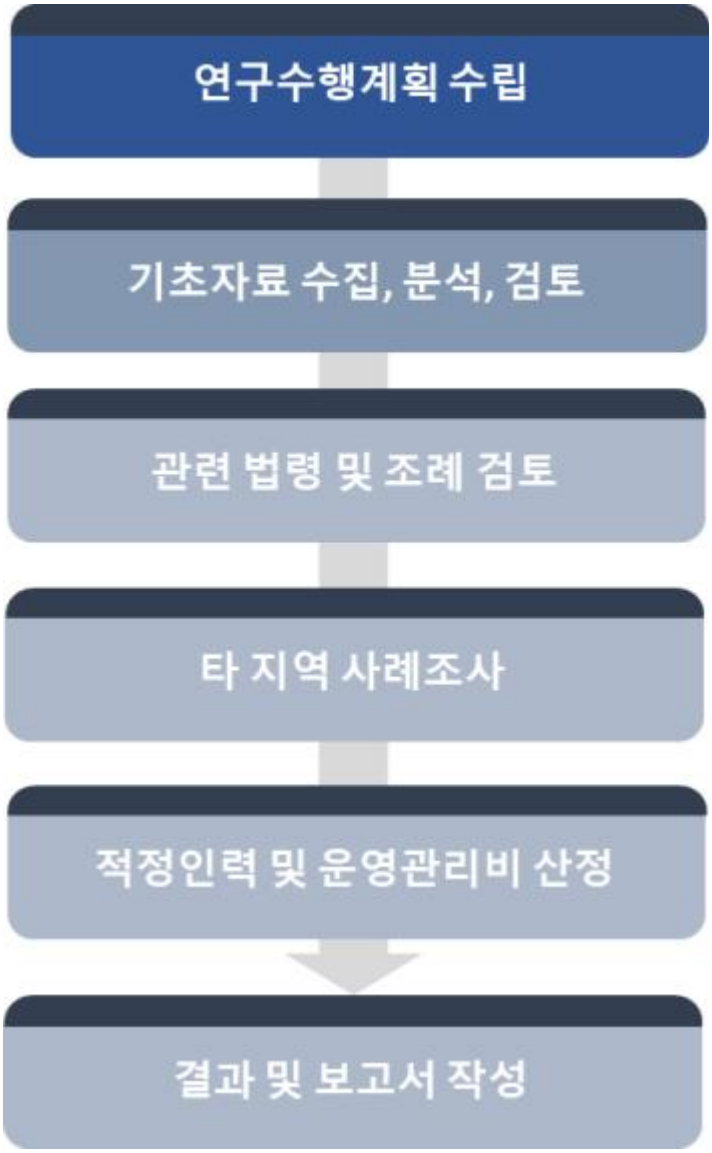

[그림 1-1] 과업 수행절차

02 현황 분석

제1절 서천군 일반현황

제2절 문화예술창작공간 현황

제2장 현황 분석

제1절 서천군 일반현황

1. 자연환경

1) 지리적 위치

○ 서천군은 충청남도 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은 부여군, 북은 보령시, 남은 금강을 경계로 전라북도 군산시를 대안하고, 서는 황해와 접하여, 동서 간 29.84km, 남북 간 18.34㎞로 위치하고 있음.

○ 서천군은 서울 206㎞, 대전과 111㎞, 광주와 130㎞, 대구와 260㎞, 군산과 17㎞, 보령과 43㎞로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장항선철도 등으로 수도권과 호남권을 연결하는 서해안·내륙도시권 교통도시로 접근성이 양호함

[표 2-1] 서천군의 지리적 위치

군청소재지	단	지명	극점	연장거리	면적
서천읍 군사리 356-3	동단	한상면 신성리	동경 126°52′	동서간29.84km 남북간18.34km	총면적 357.86km 주 위 165.00km 해안선 74.20km
	서단	사 면 마량리	동경 126°30′		
	남단	장항읍 원수리	북위 35°59′		
	북단	판교면 복대리	북위 36°11′		

자료 : 서천군 홈페이지

○ 장항선 철도와 장항항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 목포시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천~공주 고속도로가 있음

○ 충청남도 8,226.3㎢ 면적에 서천군은 365.6㎢로, 4.4% 비율의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표 2-2] 서천군 면적

서천군	충남	비율(%)
365.6㎢	8,226.3㎢	4.4

자료 : 서천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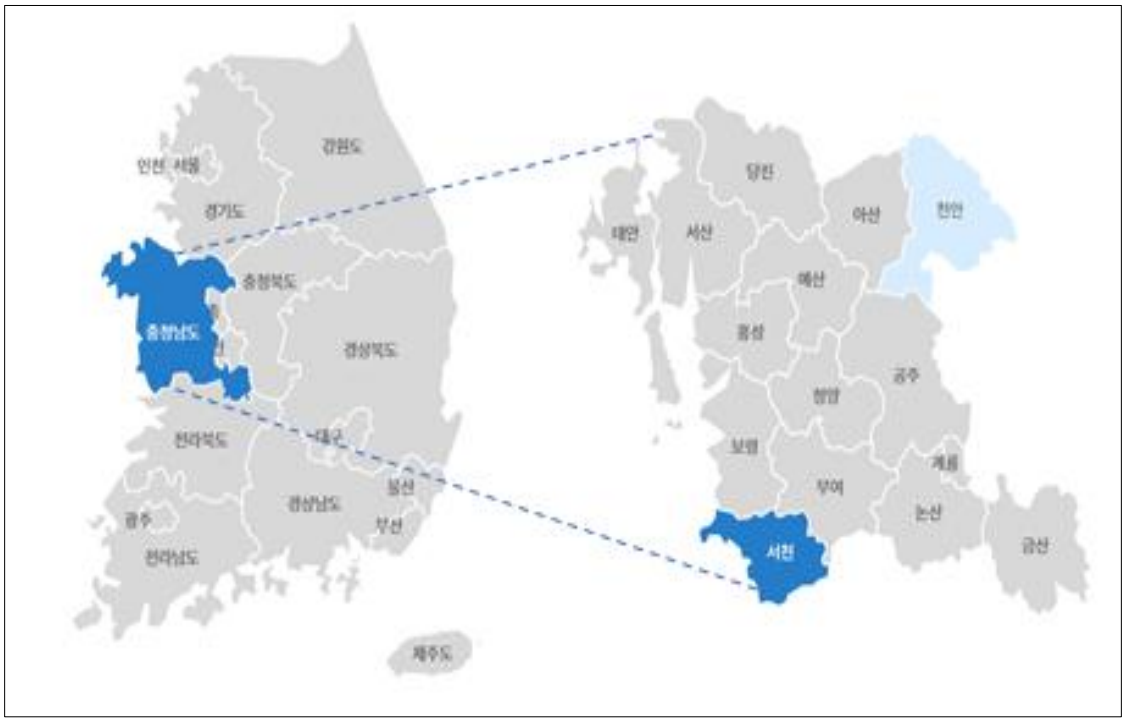

[그림 2-1] 충청남도 서천군

3) 기후 및 강수량

(1) 기온

○ 서천군의 연평균기온은 13.1℃이며, 가장 더운 8월의 평균 최고 기온은 32.7℃, 가장 추운 2월의 평균 최저 기온은 -7.0℃로, 평균풍속 17.5m/s로 나타남

[표 2-3] 평균기온, 상대습도, 일조시간, 평균풍속

(단위 : ℃, m/s)

구분	기온(℃)			평균풍속(m/s)
	평균	평균최고	평균최저	
연평균	13.1	18.9	8.2	17.5
1월	−1.8	3.5	−6.7	14.0
2월	−3.0	5.5	−7.0	17.0
3월	7.8	13.8	2.3	20.0
4월	12.5	18.5	6.3	23.0
5월	18.2	23.5	13.3	21.0
6월	22.6	27.5	18.7	19.0
7월	27.5	31.9	23.9	18.0
8월	28.2	32.7	24.5	19.0
9월	21.6	26.8	16.9	17.0
10월	13.4	20.2	7.0	15.0
11월	8.2	15.3	2.4	12.0
12월	2.0	7.1	−2.9	15.0

자료 : 서천군 2019「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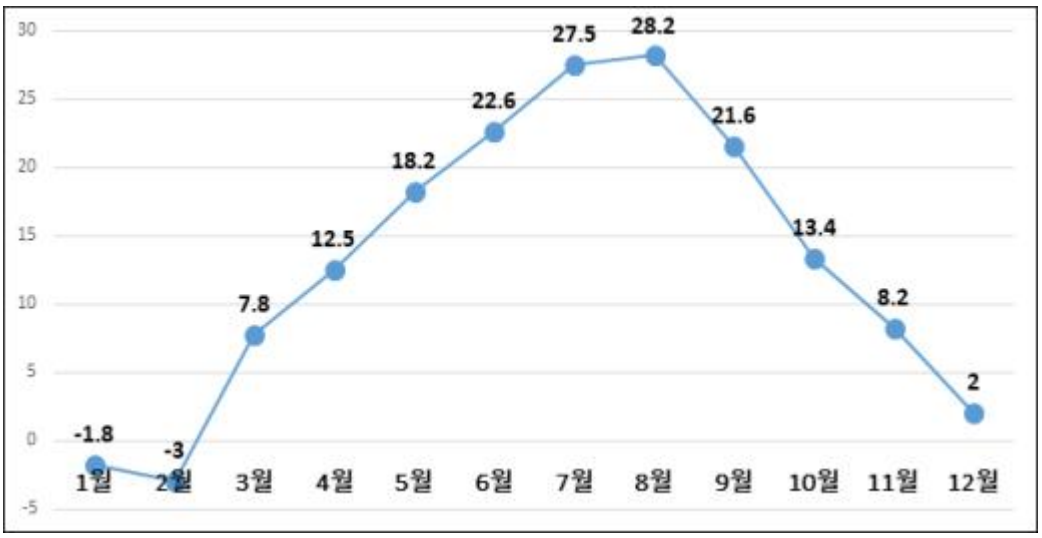

[그림 2-2] 서천군 월별 평균기온

(2) 강수량

○ 서천군의 연 강수량은 124mm이며, 8월에 346.6mm로 가장 많은 비가 왔으며, 1월에 가장 적은 2.5mm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음.

[표 2-4] 서천군 강수량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천군	23.5	33.8	101.3	117.9	129.6	98.6	319.2	346.6	81.3	148.8	53.3	33.8
장항읍	25.0	32.0	97.5	115.5	125.0	95.5	283.5	430.5	74.0	140.5	41.0	34.5
서천읍	20.0	34.5	86.0	104.5	128.5	81.5	292.5	395.0	82.0	163.5	51.5	34.0
마서면	23.0	33.0	100.5	107.0	126.0	89.5	308.0	404.5	72.5	133.5	49.5	34.5
화양면	24.5	32.0	101.0	109.5	120.5	95.0	295.5	435.5	75.0	131.5	53.0	38.5
기산면	26.0	31.5	122.0	133.5	127.5	90.0	343.0	425.0	99.0	169.0	55.5	36.5
한산면	18.5	29.0	114.0	133.5	123.0	85.5	300.5	380.0	93.0	129.5	52.5	34.0
마산면	27.5	35.5	111.0	130.5	137.5	115.5	312.0	337.0	93.5	139.5	53.0	37.5
시초면	23.5	32.5	98.0	128.5	136.0	107.0	315.5	325.5	77.0	148.5	46.5	24.5
문산면	24.5	34.0	98.5	128.5	136.0	95.5	273.5	241.5	72.5	123.5	56.0	34.0
판교면	25.5	35.0	109.0	125.5	152.0	111.0	349.0	255.5	89.0	184.5	67.0	37.5
종천면	20.0	35.0	86.0	104.5	128.5	86.5	333.5	371.5	87.0	170.0	55.0	36.0
비인면	22.0	36.0	97.5	104.0	124.5	108.5	381.0	240.0	64.0	161.5	59.0	29.5
서 면	25.0	39.0	96.0	107.5	120.0	120.5	362.5	264.5	78.5	140.0	53.5	29.0

자료 : 서천군 2019「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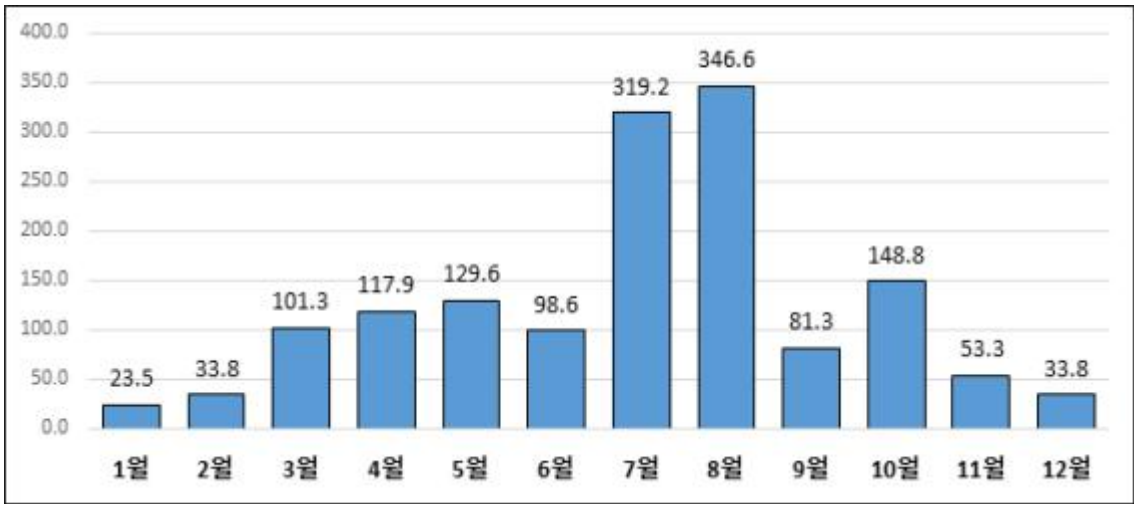

[그림 2-3] 서천군 월별 강수량

2. 인문사회 환경

1) 행정구역

○ 서천군 행정구역은 2읍 11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정 172개리와 행정 316개리, 1,291반임.

[표 2-5] 서천군 행정구역

(단위 : ㎢, 개)

면적	읍	면	리		반	마을
			행정	법정		
365.60	2	11	316	172	1,291	737

자료 : 서천군 홈페이지

[그림 2-4] 서천군 행정구역

2) 인구

○ 2018년말 기준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세대수 26,433대, 총인구는 55,289명이며, 읍·면별 인구비중은 서천읍이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초면이 각각 2.6%로 가장 낮게 조사됨

○ 남녀비중을 살펴보면, 남성 49.4% 여성 50.6%로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외국인은 1,367명으로 확인됨.

[표 2-6] 서천군 읍·면별 세대 및 인구수

(단위 : 세대, 명)

구분	세대	총인구			한국인			외국인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2018년	26,433	55,289	27,639	27,650	53,922	26,620	27,302	1,367	1019	348
장 항 읍	5,612	11,981	6,065	5,916	11,588	5,790	5,798	393	275	118
서 천 읍	5,997	14,074	6,867	7,207	13,956	6,834	7,122	118	33	85
마 서 면	2,670	5,291	2,620	2,671	5,231	2,584	2,647	60	36	24
화 양 면	1,250	2,428	1,165	1,263	2,399	1,150	1,249	29	15	14
기 산 면	956	9,043	8,122	921	1,769	849	920	7274	7273	1
한 산 면	1450	2,708	1286	1422	2,692	1277	1415	16	9	7
마 산 면	788	1,565	744	821	1,557	743	814	8	1	7
시 초 면	704	1,323	650	673	1,317	647	670	6	3	3
문 산 면	714	1,331	665	666	1,311	659	652	20	6	14
판 교 면	1204	2,243	1095	1148	2,230	1089	1141	13	6	7
종 천 면	1,185	2,229	1,096	1,133	2,150	1,039	1,111	79	57	22
비 인 면	1,618	3,160	1,577	1,583	3,130	1,559	1,571	30	18	12
서 면	2,285	5,182	2,956	2,226	4,592	2,400	2,192	590	556	34

자료 : 서천군 2019「통계연보」

○ 서천군의 65세 이상 인구를 살펴보면, 2013년 16,911명에서 2018년에는 18,048명으로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33.47%임

[표 2-7] 서천군 65세 이상 인구수

(단위 : 명, %)

구분	서천군 총인구	65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14년	57,713	17,192	29.79
2015년	56,910	17,453	30.67
2016년	56,012	17,584	31.40
2017년	55,175	17,895	32.49
2018년	53,922	18,048	33.47

자료 : 서천군 2019「통계연보」

○ 2019년 기준 서천군에는 4,890개의 사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1차 산업 0.4%(20개), 2차 산업 16.5%(810개), 3차 산업 83.0%(4,060개)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음

○ 서천군 전체 근로자 21,400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236명(2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2,699명(12.6%)이 종사하고 있으며,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0명(0.7%)과 광업 0명(0%)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표 2-8] 서천군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산업분류명칭		사업체	종사자
1차 산업	A. 농업·임업 및 어업	20	206
	B. 광업	-	-
2차 산업	C. 제조업	560	5,236
	D.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4	184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2	191
	F. 건설업	224	1,638
3차 산업	G. 도매 및 소매업	1,385	2,690
	H. 운수업	314	912
	I. 숙박 및 음식점업	978	2,126
	J.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169
	K. 금융 및 보험업	45	489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82	150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6	77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2	424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2	1,166
	P. 교육 서비스업	156	1,20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2	2,699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2	244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90	899
계		4,890	21,400

자료 : 서천군 2019「통계연보」

제2절 문화예술창작공간 현황

1. 문화예술창작공간

○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연면적 980.10㎡, 건축면적 1,005.3.㎡ 규모로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장, 동아리연습실, 다목적홀 및 다목적쉼터, 푸드카페, 야외공연장 등이 갖추어져 있음.

[표 2-9]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시설현황

구분	내용
규모	▪ 지상 1층
주요시설	▪ 주요시설 : 공연장, 동아리연습실, 다목적홀 및 다목적쉼터, 푸드카페, 야외공연장
면적	▪ 연면적 980.10㎡, 건축면적 1,005.3㎡

[표 2-10] 문화예술창작공간 공간활용 계획

구분	면적(㎡)	이용료	용 도	비고
공연장	107.35	무료	연극, 음악 등 공연프로그램 운영	상시운영
동아리 연습실 1	58.86	무료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 회의실	상시운영
동아리 연습실 2	58.32	무료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 회의실	상시운영
다목적홀, 다목적쉼터	313.47	무료	공연 발표회, 교육프로그램, 주민 모임공간 무용, 연극 등 간단한 공연연습 등 다수가 함께하는 동적활동을 위한 공간	상시운영
푸드카페	113.4	유료	주민친목도모 및 방문객을 위한 담소 공간 마련	상시운영
야외공연장	168.48	무료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야외 공연 및 동아리 활동 공간 조성	상시운영

[그림 2-5]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03 관련 법규 검토

제1절 법률 및 지침검토

제2절 조례검토

제3장 관련 법규 검토

제1절 법률 및 지침검토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표 3-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1)

구분	내용
제4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표 3-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

구분	내용
제20조 (사용수익 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 (사용수익 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표 3-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3)

구분	내용
제22조 (사용료)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문화예술진흥법

[표 3-4] 문화예술진흥법

구분	내용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표 3-5]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내용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서점 :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

[표 3-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1)

구분	내용
제12조 (사용·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계속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표 3-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2)

구분	내용
제13조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표 3-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3)

구분	내용
제15조 (사용료 체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을 위한 일반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3회차 일반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제19조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9조의2 (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
시행령 제19조의3 (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표 3-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4)

구분	내용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 (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나.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다.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2. 지출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표 3-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5)

구분	내용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계속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광업·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표 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6)

구분	내용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 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 (대부기간) -계속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하는 경우

[표 3-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7)

구분	내용
제30조 (대부기간)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대부하는 경우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계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표 3-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시행령(8)

구분	내용
제31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제31조의2 (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표 3-14]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구분	내용
제2조(생활문화시설의범위)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표 3-1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

구분	내용
제8조 (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관리수탁자)는 미리 해당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 기간 및 갱신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 ÷ 건폐율)하여 부지면적 산출 가능 예시) 부지가 넓은 공원의 매점 등

[표 3-16]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2)

구분	내용
별표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라. 공유재산의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경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부지를 기준으로 층 효용 및 용도를 고려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건물평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의 경우가 해당되며, 통신중계기 등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 가능 ※ 토지의 주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주차장 지붕 형태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경우도 적용가능 1)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건축부지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2) 옥상지수 : 건물의 층 효용 및 용도를 반영하여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 $\frac{\text{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sum_{\text{최하층}}^{\text{최상층}}\text{건물(층연면적×층효용비×용도비)}+\text{옥상(층효용비×용도비×사용허가면적)}}$ ① 층별 효용비 : 행정안전부「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별표4 지수 적용 ※ 옥상의 층 효용비는 최상층 지수 적용(예: 3층 건물은 3층 효용비 적용) ② 용도비 : 옥상은 30%를 적용 ③ 사용허가 면적 : 사업허가를 득한 면적을 말함 층효용비 층 효용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층 |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층 이상 | 35 | | 4층 | 40 | 42 | 80 3층 | 50 | 45 | 100 2층 | 60 | 60 | 100 1층 | 100 | 100 | 100 지하 1층 | 44 | 44 | 48 지하 2층 이상 | 38 | 40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별표4> 용도비 용도비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매년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준용하여 적용하되 옥상은 30을 적용한다. 구분 | 주용도 (교육시설, 주거 등) | 부속용도 (기계실, 창고,주차장) | 옥상 용도비 | 100 | 60 | 30

[표 3-17]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3)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별표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td><td>
2. 납입고지
가. 사용료·대부료는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시작하기 전에 선납하여야 함
나. 변상금은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각대금·교환차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 변상금 부과대상 재산을 사용·대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분납)을 조건으로 사용·대부 가능함
라. 매각대금, 교환차금은 60일 이내에서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케 할 수 있음. 이 경우 중도금·잔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으며,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만 연체이자를 부과함

3. 선하지 대부료 산정
가. 산정기준
1)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2)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시가를 반영하여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나.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1)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산정하되 평균치를 적용하여 아래 표의 '공중·지하 저해율'을 적용할 수 있음
대부료 = 토지대부료(선하지 면적 × 개별공시지가 × 대부기간 × 대부요율) × 입체이용저해율(기본율)
2) 입체이용저해율 산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상의 '입체이용저해율 적용표'에 따라 산정

[표] 공중·지하 입체이용저해율
<table>
<tr><th>구분</th><th>고층시가지</th><th>중층시가지</th><th>저층시가지</th><th>주택지</th><th>농지,임지</th></tr>
<tr><td>기타이용률</td><td>5%</td><td>15%</td><td>15%</td><td>15%</td><td>10%</td></tr>
<tr><td>상하배분비율</td><td>1:1~2:1</td><td>1:1~3:1</td><td>1:1~3:1</td><td>1:1~3:1</td><td>1:1~4:1</td></tr>
</table>
<table>
<tr><td>공중부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최 고 비</td><td>0.5</td><td>0.5</td><td>0.5</td><td>0.5</td><td>0.5</td></tr>
<tr><td>최 저 비</td><td>0.67</td><td>0.75</td><td>0.75</td><td>0.75</td><td>0.8</td></tr>
<tr><td>평 균 비</td><td>0.58</td><td>0.63</td><td>0.63</td><td>0.63</td><td>0.65</td></tr>
</table>
<table>
<tr><td>공중저해율</td><td>2.9%</td><td>9.4%</td><td>9.4%</td><td>9.4%</td><td>6.5%</td></tr>
<tr><td>지하저해율</td><td>2.1%</td><td>5.6%</td><td>5.6%</td><td>5.6%</td><td>3.5%</td></tr>
</table>
</td></tr>
</table>

[표 3-18]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4)

구분	내용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계속	1. 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함에 있어 위탁료 산정,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통일적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리위탁 대상 관리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때와 비교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 단체 등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가. 유지관리 성격의 재산 -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민간이 운영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재산 나. 주차장 등과 같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수익을 창출(수익목적)하는 성격의 재산 다. 유지관리 및 수익 목적의 혼합형 재산은 그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 * 공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권력적 사무 또는 재량적인 가치판단을 요는 사무 등은 관리위탁에서 제외 * 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행정재산 관리위 대상이 아닌 아웃소싱(용역)임. 예) 환경기초시설, 청사관리 등 3. 용어의 정의 가. 위탁료 : 지방자치단체가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비용의 차액 나. 사용료 : 수탁재산 중 일부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다.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라. 추정가격 : 지출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산출된 위탁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 마. 예정가격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

[표 3-19]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5)

구분	내용
별표4 (행정재산 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4. 위탁료 산정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나.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함 다. **원가계산 비목** **1) (지출항목) 인건비, 경상경비(수선유지비 포함), 공과금(세금, 보험료 포함)** **2) (수입항목)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라.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1) 수입에 대한 원가는 해당 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의 평균 수입액으로 결정한다. 단,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는 인근 유사재산의 최근 3년간(3년 이내인 경우 그 기간) 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인건비는 재산의 관리하기 위하여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기본급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을 포함한다. ■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3) 경상경비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아래 항목별 경비의 합계액 + 인건비 및 아래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100분의5)을 곱한 금액 ■ 수리수선비 :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복리후생비 :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공상치료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근무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소모품비 : 재산관리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여비·교통비·통신비 : 재산 관리 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또한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관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도서인쇄비 : 재산 관리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표 3-20]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6)

구분	내용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계속	4) 공과금 = 재산의 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과금의 총 합계액 ■ 세금과 공과금 : 관리위탁자가 해당 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담할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5) 입장료·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 입장료·이용료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공공시설에 대해 징수한 수입액을 의미한다. ■ 사용료 : 공유재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 ■ 기타수입 : 재산관리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비 등을 말한다. 5. 예정가격 작성 가. 예정가격은 원가계산으로 산정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이 예정가격 (최고가 입찰) 2)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① 원가분석 → ② 기초금액 작성 → ③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④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⑤ 예정가격 결정 절차를 따른다. 3) 기초금액은 원가분석 한 금액을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다.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5)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입찰종료 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한다. 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규정하는 면세의 범위를 검토하여 판단 라. 이용료를 운영경비와 상계 처리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입찰하고, 수익시설에 발생하는 사용료는 관리수탁자에게 별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 6. 관리수탁자 선정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가능함. 다만 개별법률 등에 수의계약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함 가. 입찰에 의한 방식 1) 입찰방법 기준 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 : 최고가낙찰 - 원가분석 결과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 ②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 : 적격심사 - 원가분석 결과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

[표 3-2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7)

구분	내용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계속	2) 입찰참가자격 ① 공통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② 제한입찰 -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관리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기준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 재산의 규모·양 또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에 부칠 해당 재산의 규모 또는 예정가격(추정위탁료)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의 특성, 경쟁성, 관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위탁관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의 기술제한 ■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 신기술·특허공법 등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지명입찰 -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 -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3) 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 - 세부심사기준 열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계약방법,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 ② 입찰공고 시에는 예정가격 결정시 산출된 수입·지출의 예측원가를 자세히 공개하여 입찰참가자가 손익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낙찰자 결정 ① 최고가 낙찰 -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②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격심사기준에 따른다. - 관리위탁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 ③ 협상에 의한 경우 -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관리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함 - 입찰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예규에 따른다.

[표 3-22]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8)

구분	내용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계속	5)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처리한다. ③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나. 수의에 의한 방식 **1) 수의계약 대상** **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②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 평가기준 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관리위탁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되, 평가심사에 필요한 세부항목 등은 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정한다. 7. 위·수탁 계약 가. 계약체결 1)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2) 계약체결 시에는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료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처리하되, 수탁기관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도록 할 수 있음

[표 3-23]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9)

구분	내용
별표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 계속	4)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전대 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수익 허가된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음 ※ 수탁재산 중 식당·매점 등과 같은 수익재산이 해당함 ③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수탁계약 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심사하여야 함 ④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고,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 5)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수탁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여야 함. 6) 향후 발생하는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주차요금 등과 같이 공공시설에 대해 조례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위탁료와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자체수입이 위탁비용을 대신하도록 하는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도 가능 함 나. 계약금액 조정 1)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보존하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대상 재산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아래의 재산 관리내용을 관리수탁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 특정 재산관리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청구에 의하고,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표 3-2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10)

구분	내용
별표4 (행정재산 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	③ 관리수탁자가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위·수탁계약에 있어서 재산관리 위탁내용의 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동 외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 계약의 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체결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가 위탁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③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료 정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위탁기관의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위탁 계약 시 아래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 권리(운영기준 제10조의2 관련) 2) 관리수탁자의 위탁재산 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및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정치활동 등 관리위탁의 본래 목적 외의 활용 금지 마. 부정당업자 제재 1)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겨우 3)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2절 조례 검토

1.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 3-25]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1)

구분	내용
제30조 (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과 같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제4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와 최근 공시된 충청남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 제>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이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에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⑥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를 연간 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 또는 횟수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경작목적의 농경지로 대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표 3-26]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2)

구분	내용
제32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를 산출할 때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해야 한다. ③ 삭제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할 때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건물 공용면적 산출: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 공용면적 산출: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라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제33조 (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표 3-27]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3)

구분	내용
제32조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영 제29조제1항제12호·제14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2.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표 3-28]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분	내용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천군 복합문화시설"(이하 "복합문화 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② 복합문화시설의 종류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미디어문화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2. 서천군기벌포영화관(이하 "기벌포영화관"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45번길 30 **3. 서천군문화예술창작공간(이하 "문화예술창작공간"이라 한다):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23** 4.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시설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복합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신청자와 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하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복합문화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복합문화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9조 (수탁관리자의 자격)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센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 있고,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이 인정되며 충청남도 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9.10.21.> 2. 기벌포영화관: 영화관을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충청남도 내에 본부가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3. 문화예술창작공간: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11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수탁관리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사용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운영 및 사용 시간)	미디어센터와 문화예술창작공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10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미디어센터와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화요일~금요일: 09:00부터 18:00까지 2. 토요일: 10:00부터 17:00까지

04 운영인원 산정

제1절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검토
제2절 유사시설 사례 검토
제3절 운영인력 산정

제4장 운영인원 산정

제1절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검토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의거 문화예술창작공간과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같은 생활문화시설에 해당되며, 이에 같은 범주의 시설로 간주하여 사례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함.

1.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 인력 현황

○ 각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인력은 평균 2.6명으로 확인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권 2.9명, 대전·충청권 2.4명, 광주·전라권 2.4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권이 1.8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 지역별 운영인력 현황

(단위: 개, %)

구분		센터 수	1명 이하	2~3명	4~5명	6~10명	11명 이상	평균(명)
전체		112	28.6	50.0	14.3	6.3	0.9	2.6
지역	수도권	23	17.4	39.1	30.4	13.0	-	3.7
	강원권	8	37.5	50.0	-	12.5	-	2.3
	대전·충청권	15	26.7	66.7	-	6.7	-	2.4
	광주·전라권	28	28.6	46.4	25.0	-	-	2.4
	대구·경북권	12	41.7	58.3	-	-	-	1.8
	부산·울산·경남권	24	25.0	54.2	8.3	8.3	4.2	2.9
	제주권	2	100.0	-	-	-	-	-

자료: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표 4-2] 운영인력 규모 및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명)

운영인력 규모 분포	지역별 분포 운영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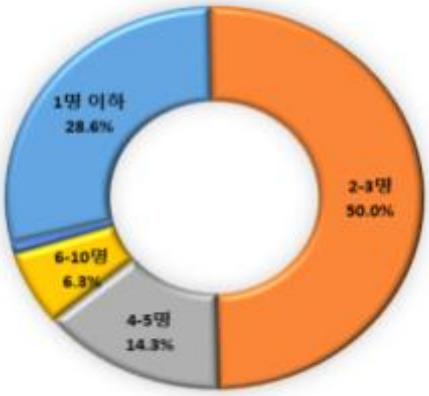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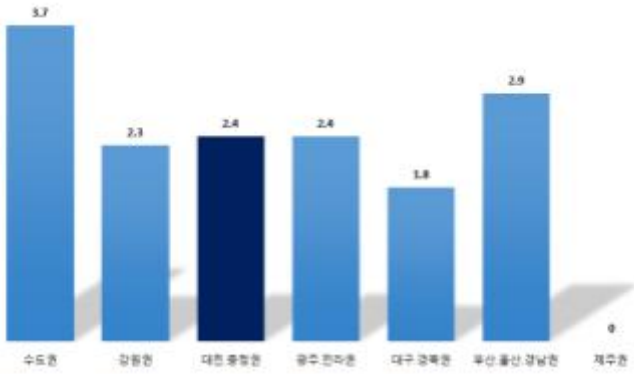

자료: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2. 지역별 운영인력 분석

○ 운영인력 구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정규직 1.5명, 계약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전담인력 1.5명, 겸임인력 1.2명 수준임.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권의 경우 평균 운영인력이 2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인력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으며, 수도권이 평균 3.7명, 정규직 평균 2.2명, 전담인력 평균 2.4명으로 인력이 가장 많음.

[표 4-3] 지역별 운영인력 구성

(단위:명)

구분		합계	계약형태별			전담여부별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전담인력	겸임인력
전체		2.6	1.5	1.0	0.2	1.5	1.2
지역	수도권	3.7	2.2	1.3	0.2	2.4	1.3
	강원권	2.3	1.5	0.8	–	1.4	0.9
	대전·충청권	2.4	1.4	0.9	0.1	1.3	1.1
	광주·전라권	2.4	1.3	0.9	0.2	1.3	1.1
	대구·경북권	1.8	0.8	0.8	0.2	0.8	0.9
	부산·울산·경남권	2.9	1.5	1.2	0.2	1.5	1.4
	제주권	–	–	–	–	–	–

자료: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3. 운영방식에 따른 운영인력 분석

○ 운영별로 보면 민간위탁 센터의 전담인력이 평균 1.9명으로 가장 많고, 지자체 직영 센터는 전담인력이 평균 1.2명으로 나타남.

[표 4-4] 운영별 운영인력 구성

(단위: 명)

구분		합계	계약형태별			전담여부별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전담인력	겸임인력
전체		2.6	1.5	1.0	0.2	1.5	1.2
운영 유형	지자체 직영	2.1	1.2	0.8	0.1	1.2	0.9
	민간위탁	3.4	1.9	1.3	0.2	1.9	1.4
	주민자율	2.1	0.9	1.0	0.2	0.8	1.3

자료: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표 4-5] 운영유형별 운영인력 구성

(단위: %, 명)

지역별 운영인력 구성	운영유형별 운영인력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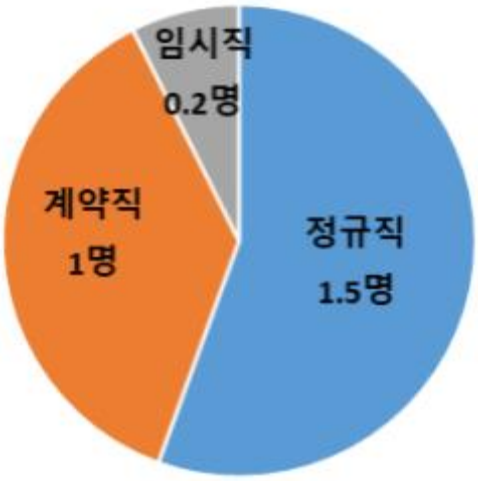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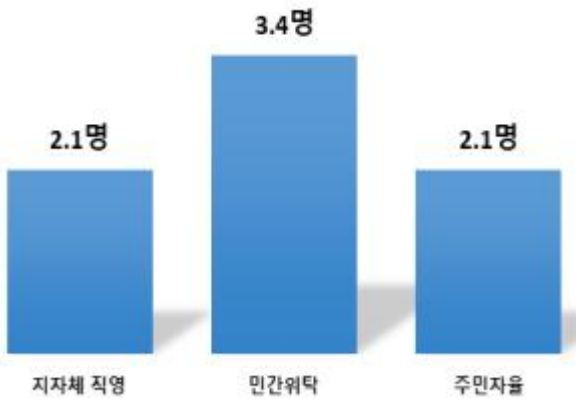

자료: 2018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제2절 유사시설 사례 검토

1. 문화예술창작공간

1)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가. 시설개요

○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주민과의 연계 활동을 위해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49번길 8에 설립되었음.

[표 4-6]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시설개요

구분	내용
센터명	▪ 서동 예술창작공간
위치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49번길 8
설립년도	▪ 2012년 6월
시설규모	▪ 연면적 529㎡, 지상 2층
주요시설	▪ 1층: 갤러리, 북카페, 작은 도서관, 미로 박물관 ▪ 2층: 창작실, 다목적실, 사무실
비고	▪ 북카페 무료 운영

[그림 4-1]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전경

[그림 4-2]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주요시설

나. 운영현황

○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은 금정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1명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학생 인턴제도를 통해 유동적으로 인원을 활용하고 있음.

[표 4-7]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 운영현황

구분	내용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시간	▪ 월~토(일, 공휴일 휴무) ▪ 주 6일 근무제 ▪ 10:00~18:00
운영인력	▪ 정규직 1명 (대학생 인턴 2명), 환경미화 1명
연간예산	▪ 운영비 5천만원 (강사료, 사업비 포함)
비고	▪ 대관료를 통한 수입 발생

2) 대전 테미 예술창작센터

가. 시설개요

○ 대전 테미 예술창작센터는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99번길 37-1에 위치하며 대전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음.

○ 문화예술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휴공간이었던 (구)테미도서관을 리모델링하여 조상한 시각예술 레지던스임.

[표 4-8] 대전 테미 예술창작센터 시설개요

구분	내용
센터명	▪ 대전 테미 예술창작센터
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99번길 37-1
설립년도	▪ 2016년 8월
시설규모	▪ 연면적 1380㎡, 지하1층, 지상 2층
주요시설	▪ 지하1층: 전시실(2개) ▪ 1층: 아트라운지, 휴게실, 운영사무실, 화장실, 세미나실 ▪ 2층: 1~6 스튜디오, 미디어실, 공동작업실, 주방세탁실, 샤워실
비고	

[그림 4-3]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전경

나. 운영현황

○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는 3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개인역량을 키우기 위한 특화 사업으로써, 입주예술가들과 더불어 대전시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음.

[표 4-9]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운영현황

구분	내용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시간	▪ 월~금(토,일, 공휴일 휴무) ▪ 주 5일 근무제 ▪ 10:00~18:00 (시간 재확인필요)
운영인력	▪ 정규직 3명, 계약직 1명(유동적)
운영예산	▪ 7억 (행사비: 3억 6천 포함)
비고	▪ 입주예술가 1년에 1번 공모를 하여 심사를 통해 입주예술가 모집 진행. ▪ 입주예술가 사용료, 공간대여(대관)비 무료, 창작활동 지원, 활동비 지원 ▪ 입주예술가의 작업실 공개 및 오픈 스튜디오, 작업 전시, 개인전 프로젝트 등 의무 프로그램을 참여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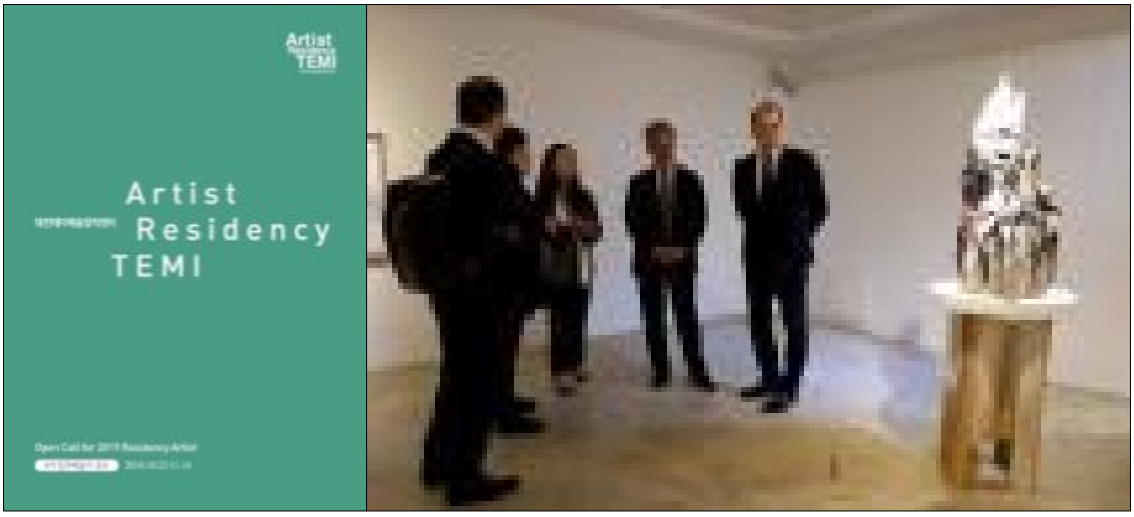

[그림 4-4] 입주예술가 공고모집 및 실제 전시 모습

3) 서울 평화문화진지

가. 시설개요

○ 서울 평화문화진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마들로 932에 위치하며 도봉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음.

[표 4-10] 서울 평화문화진지 시설개요

구분	내용
센터명	▪ 서울 평화문화진지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마들로 932
설립년도	▪ 2017년 10월
시설규모	▪ 연면적 1870㎡, 각 5개동
주요시설	▪ 1동(시민동): 공연장, 연습실, 카페, 공동주방, 경비실, 세미나실, 전시복도 ▪ 2동(창작동): 전시실2개, 스튜디오3개, 물품보관소, 전시복도 ▪ 3동(문화동): 사무실, 스튜디오3개, 물품보관소, 공유공방, 전시복도 ▪ 4동(예술동): 커뮤니티실, 기획스튜디오2개, 미화직원 휴게실, 공유공방2개, 전시복도 ▪ 5동(평화동): 전시실2개, 군지휘소
비고	

[그림 4-5] 서울 평화문화진지 전경 및 주요시설

나. 운영현황

○ 대전차방호시설의 흔적을 보존한 채,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민문화 향유시설로서의 공간 활용 및 공간 전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술가의 문화적 교류와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음.

[표 4-11] 서울 평화문화진지 운영현황

구분	내용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시간	▪ 화~금(월, 주말, 공휴일 휴무) ▪ 주 5일 근무제 ▪ 10:00~18:00
운영인력	▪ 7명
운영예산	▪ 비공개
비고	▪ 입주예술가 1년에 1회 모집, 6~12인(팀)으로 작가 및 기획자 지원 가능. ▪ 전시·공연·프로그램 운영 시 일부 예산지원, 홍보 및 행정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입주예술가의 작업실 공개 및 오픈 스튜디오, 작업 전시, 개인전 프로젝트 등 의무 프로그램을 참여해야함.

[그림 4-6] 입주작가 모집 공고 및 오픈 스튜디오

4)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가. 시설개요

○ 완주 해동문화예술촌은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1길 6에 위치하며 담양군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에 있음.

[표 4-12]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시설개요

구분	내용
센터명	▪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위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1길 6
설립년도	▪ 2019년 06월
시설규모	▪ 연면적 1800㎡(추정치), 6개동
주요시설	▪ 6~7월부터 리모델링으로 미확정
비고	▪ 리모델링 진행중으로 각 시설별전용면적을 통해 연면적 추정함.

[그림 4-7]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전경

나. 운영현황

○ 2019년 6월에 개관하여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구 해동주조장, 구읍교회, 구 담양의원 세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새로운 담양의 문화동력과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표 4-13]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운영현황

구분	내용
개관시간	▪ 화~일(둘째주, 넷째주 월요일, 명절 당일 휴무) ▪ 주 6일 근무제 ▪ 10:00~18:00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예산	▪ 2억
운영인력	▪ 감독 1명, 팀원 3명
비고	▪ 분기별로 전시프로그램 및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 생활문화센터 운영방식

[그림 4-8]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전시모습

2. 생활문화센터

1) 당진 생활문화센터

가. 시설개요

○ 당진 생활문화센터는 충남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당진의 문화예술 동아리의 활발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생활 문화 발전을 위해 설립되었음.

[표 4-14] 당진 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

구분	내용
센터명	▪ 당진 생활문화센터
위치	▪ 충남 당진시 남산공원길 151-16
설립년도	▪ 2018년 12월
시설규모	▪ 연면적 1129.91㎡, 지상 3층
주요시설	▪ 1층: 공연장(180㎡) ▪ 2층: 동아리방1,2(45㎡, 22.5㎡), 다목적회의실(60.9㎡), 소전시실(45㎡), 북카페(40㎡) ▪ 3층: 방음연습실(18㎡), 무용실(108.6㎡), 공예실(34.8㎡), 미술실(45.24㎡)
비고	

[그림 4-9] 당진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동아리실 내부

나. 운영현황

○ 당진 생활문화센터는 당진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직 2인이 근무 중에 있음.

[표 4-15] 당진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구분	내용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시간	▪ 월~토(일, 공휴일 휴무) ▪ 주 6일 근무제 ▪ 09:00~21:00
운영인력	▪ 계약직 2명
운영예산	▪ 1억 1천만원
비고	▪ 대관료를 통한 수입 발생

2) 온양 생활문화센터

가. 시설개요

○ 온양 생활문화센터는 충남 아산시 남산로 28에 위치하며, 2015년 4월에 설립되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표 4-16] 온양 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

구분	내용
센터명	▪ 온양 생활문화센터
위치	▪ 충남 아산시 남산로 28
설립년도	▪ 2015년 04월
시설규모	▪ 연면적: 824.22㎡, 지상 4층
주요시설	▪ 1층: 사무국, 원장 사무실(49.7㎡) 커뮤니티공간(북카페)(138.6㎡) ▪ 2층: 소리방-음악관련 연습공간(35.42㎡) 사랑방-공예, 미술, 생활문화동아리 작업공간(92.4㎡) 꾸밈방-동아리회의 및 학습공간(36.2㎡) 자료실(32.4㎡) ▪ 3층: 다목적실(185.85㎡)-댄스동아리 및 연습공간 ▪ 4층: 다락방1, 2(32.32㎡)-공예, 미술생활문화동아리 동아리회의 및 학습공간
비고	

나. 운영현황

○ 온양 생활문화센터는 온양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3인이 근무 중으로, 온양문화원에서 유동적으로 배치되며, 청소용역업체를 통한 시설물 관리를 함.

[표 4-17] 온양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구분	내용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시간	▪ 월~금(일, 공휴일 휴무) ▪ 주 5일 근무제 ▪ 09:00 ~ 21:00 (토요일: 09:00~12:00)
운영인력	▪ 팀원 3명
운영예산	▪ 2억 5천
비고	▪ 대관료를 통한 수입 발생

[그림 4-10] 온양 생활문화센터 전경 및 내부 모습

3) 청주 생활문화센터

가. 시설개요

○ 동부창고는 옛 청주연초제조창의 담배잎 보관창고로 60년대 공장창고의 원형을 유지하여 리모델링함.

○ 청주 생활문화센터는 충남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에 위치하며 동부창고 34동에 해당함.

[표 4-18] 청주 생활문화센터 시설개요

구분	내용
센터명	▪ 동부창고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설립년도	▪ 2017년 08월
시설규모	▪ 연면적: 996.6㎡, 5동으로 구성.
주요시설	▪ 1층 대관 가능 공간 : 빛내림홀(마주침공간), 동아리실, 교육실(재봉실), 음악연습실 1,2 ▪ 1층 무료 공간 : 카페, 책골목길, 키즈존,2 (32.32㎡) :공예, 미술생활문화동아리 동아리회의 및 학습공간
비고	

[그림 4-11] 청주 동부창고 전경

나. 운영현황

○ 청주 생활문화센터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5명이 근무 중으로 전시, 교육, 공연을 기반으로 생활문화 활동을 하고 동부창고 페스티벌 등 문화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표 4-19] 청주 생활문화센터 운영현황

구분	내용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시간	▪ 월~금(일, 공휴일 휴무) ▪ 주 5일 근무제 ▪ 09:00 ~ 22:00 (토요일: 09:00~18:00)
운영인력	▪ 5명(기획실장 1명, 팀장 1명, 팀원3명)
운영예산	▪ 1억2천만원
비고	▪ 대관료를 통한 수입 발생, 카페 운영, ▪ 5명이 순환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문화센터를 3명이 담당하고 있음

[그림 4-12] 청주 동부창고 36동 내 책골목길

[그림 4-13] 청주 동부창고 36동 문화살롱

제3절 운영인력 산정

1. 전국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검토 결과

○ 전국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인력은 평균 2.6명이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와 같은 경우 3.4명, 지역별로는 대전·충청권 2.4명으로 확인됨.

○ 전국 생활문화센터 계약형태별 운영인력은 정규직이 평균 1.5명이며, 계약직은 1.0명, 임시직은 0.2명으로 수준으로 분석되며, 전담여부에 따라 전담인력 1.5명 겸임인력은 1.2명 수준으로 확인됨.

[표 4-20]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례 검토 결과

(단위: 명)

구분	합계	계약형태별			전담여부별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전담인력	겸임인력
전체	2.6	1.5	1	0.2	1.5	1.2
민간위탁	3.4	1.9	1.3	0.2	1.9	1.4
대전·충청권	2.4	1.4	0.9	0.1	1.3	1.1

자료: 2018년 생활문화센터 운영 실태조사

2, 유사시설 사례 검토 결과

1) 문화예술창작공간 사례 검토 결과

○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은 연면적을 고려했을 때 서천군 문화창작예술공간과 규모 및 주요 시설이 비슷하였으나, 완주는 생활문화센터 외 5개의 전시활동이 가능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규모의 차이가 있었고, 대전과 서울 문화예술창작공간은 입주예술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운영방식 및 주요시설에 많은 차이가 있음.

○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인원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21]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사례 검토 결과

부산 서동예술창작공간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서울 평화문화진지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업무	인원	업무	인원	업무	인원	업무	인원
센터장	1명	팀장	1명	센터장	1명	감독	1명
팀원	1명	팀원	2명	팀장	1명	팀원	3명
-	-	단기근로자	1명	팀원	5명	-	-
계	2명		4명		7명		4명

주)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서울 평화문화진지 - 입주예술가 기반 운영 공간

○ 조직 및 시설 특성에 따라 운영인원의 편차가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여 적정 운영인력은 해당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시설면적비율을 적용하여 검토함.

○ 면적 비율 적용 검토 결과, 부산 서동 예술창작공간은 2명, 대전 테미 예술창작센터는 2.8명, 서울 평화문화진지 3.7명, 완주 해동문화예술촌은 2.2명으로 시설 평균 운영인력은 2.7명으로 분석됨.

[표 4-22] 면적비율 적용 검토

부산 서동예술창작공간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서울 평화문화진지		완주 해동문화예술촌		운영 인력 평균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1	2명	0.7	2.8명	0.5	3.7명	0.5	2.2명	2.7명

주) 시설면적비율은 서천 문화예술창작공간 연면적 대비 시설별 연면적으로 계산함

2) 생활문화센터 사례 검토 결과

○ 생활문화센터 사례는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연면적과 유사한 규모를 대상으로 검토함.

- 당진 생활문화센터의 연면적은 1,129.91㎡, 온양문화원의 연면적 824.22㎡, 청주 동부창고 36동 연면적 996.6㎡으로 확인됨.

○ 인근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례 검토 결과 당진문화원은 2명, 온양문화원 4명, 청주 동부창고는 3명으로 평균 2.9명 정도로 조사됨.

○ 다만, 사례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업무 범위의 차이가 있음.

- 온양 생활문화센터는 층고에 있어 지상 4층 규모로 확인되어, 관리범위에 있어서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보다 넓은 편임.
- 청주 생활문화센터의 경우 생활문화센터 업무 외에 센터가 입주한 건물의 5개 동을 유지관리하는 업무가 추가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상태임.

○ 이에 본 생활문화센터 사례에서 검토된 평균 인력인 2.9명은 업무 범위에 있어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대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며, 직무에 따른 인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표 4-23] 생활문화센터 운영사례 검토 결과

당진 생활문화센터 당진문화원		온양 생활문화센터 온양문화원		청주 생활문화센터 동부창고		운영 인력 평균
업무	인원	업무	인원	업무	인원	
사무국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원	3명	
팀원	1명	팀원	3명	-	-	
계	2명	계	4명	계	3명	2.9명

3. 직무분석을 통한 인원 산정

○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운영 관리와 시설 관리를 위한 업무를 계획하고, 이를 직무분석에 반영하였으며, 각 업무에 따른 적정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음.

○ 문화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직무를 관리업무와 시설업무로 구분하고 2명이 필요함. 관리업무는 총괄운영과 사무로 구분함.

- 총괄운영(운영팀장)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담당하며, 문화사업에 대한 기획과 관리 등을 수행함.
- 사무(실무자)는 회계 및 행정, 강사프로그램 및 인력 담당을 수행함.

○ 시설업무는 환경미화 및 보조 관리업무로 전반적인 건물 내외부 청소와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함.

[표 4-24] 직무분석 검토 결과

구분		인원	담당업무	계약형태
관리업무	총괄운영 (운영팀장)	1명	관리팀 업무 총괄 문화사업팀 사업 기획 관리 등 운영 총괄	정규직
	사무 (실무자)	1명	회계, 행정업무 및 강사인력관리 등	정규직
시설업무	환경미화	1명	시설관리 및 환경미화 사무보조 수행	단시간 근로자
계		3명		

○ 운영팀장과 사무, 시설업무는 주간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며, 시설업무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하여 시간제 파트타임을 활용해서 이용객이 많은 요일에 배치하도록 함.

4. 적정 운영인력 산정결과

○ 적정 운영인력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서천 문화예술창작공간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적정 운영인력은 직무분석을 적용하여, 관리업무 2명과 시설업무 보조를 위한 단시간 근로자 1명으로 산정함.

[표 4-25] 적정 운영인력 산정결과

구분		내용	비고
문헌조사		2.4명	대전 충청권 평균 인력 (정규직 1.4명, 계약직 0.9명)
사례조사	문화예술창작공간	2.7명	시설별면적에 따른 적정 인력
	인근생활문화센터	2.9명	
직무분석		2명	관리업무: 2명(정규직) 시설업무: 1명(단시간 근로자)
적용 인원		**2명**	**단시간 근로자 1명**

주)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 주 15시간미만 근로자를 뜻함

05 위탁비용 산정

제1절 원가산정기준
제2절 위탁비용산정

제5장 위탁비용 산정

제1절 원가 산정 기준

1. 원가조사의 기본전제

○ 본 연구의 대상 시설인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원가산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내 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의 위탁료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10.08.)의 원가 산정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하였음

2. 원가 구성 요소

1) 인건비

○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의 조항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업무별 제조부문 노임단가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였음

○ 총괄책임자는 제조부문 작업반장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음

○ 운영관리자는 단순 노무 업무로써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단시간 근로자는 최저시급 적용을 고려하였으나,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율로 인한 적정임금 확보가 어려울 것을 고려하여,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의 시급으로 산정하였음

[표 5-1] 인건비 세부 산출기준

구 분	업무	적용기준
문화예술창작공간	총괄책임자	제조부문 작업반장 노임단가
	운영관리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단기근로자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시급적용

2) 경상경비

(1) 수리수선비

○ 수리수선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을 위해 가동하는 시설의 수선비용으로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공구 등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소모품 비용을 의미하며, 문화예술창작공간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시공업체 AS기간을 고려해 준공 첫해 수리수선비를 미적용하였음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업무 조건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급식비용을 산정하였음

○ 급식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종사하는 인력 중 일용직(청소, 미화)을 제외한 모든 인력에 대해 적용하였고, 2020년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음

(3) 인적 보험료

○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인적 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별 신분에 따라 연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5-2] 인적보험료 산출표

구 분	산정원칙	근거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의 4.5%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국민연금법 제88조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건강보험	표준보수월액의 3.34%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산재보험	표준보수월액의 0.73%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75호
고용보험	표준보수월액의 1.05%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율 고시
임금채권 보장보험	표준보수월액의 0.06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95호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
노인장기 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0.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4) 여비교통통신비

○ 여비교통통신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필요한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에 대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배부 대상액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 2018년도 기준 공사부문 예정가격작성 활용자료(경비율)을 적용 산출하였음

(5) 소모·사무용품비

○ 소모·사무용품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소모성 물품에 대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배부 대상액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 2018년도 기준 공사부문 예정가격작성 활용자료(경비율)을 적용 산출하였음

(6) 도서인쇄비

○ 도서인쇄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필요한 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등에 대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배부 대상액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 2018년도 기준 공사부문 예정가격작성 활용자료(경비율)을 적용 산출하였음

(7) 세금과공과

○ 세금과공과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필요한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대한건설협회 2018년도 기준 공사부문 예정가격작성 활용자료(경비율)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8) 홍보비

○ 홍보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시중단가로 산정하였음

(9) 강사료

○ 강사료는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서 2018년부터 2019년도 시행한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와 시간을 정해 산정함.

3) 공과금

(1) 전력비

○ 전력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사용되는 기기(건물 냉난방, 조명, 전시시설물 등)의 전력비용을 의미하며, 문화예술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조명 변화와 냉난방기 추가 설비로 인해 리모델링 설계도면과 건축시방서를 기준으로 연간 사용량을 추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일반용(갑)저압 전력요금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음

(2) 용수비

○ 용수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사용되는 일반용수에 대한 비용으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납입한 납입고지서를 기준으로 음용수 및 일반 생활용수에 대하여 서천군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산정하였음

(3) 보험료

○ 보험료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8년 불입한 보험 납입내역서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함.

(4)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소방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기타지급수수료, 무인경비용역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8년 납부내역서를 기준으로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4) 사용료

○ 공유재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푸드카페 예정면적을 대상으로 서천군 적용 요율에 따라 산정하였음.

제2절 위탁비용 산정

1. 총괄원가계산서

○ 문화예술창작공간 위탁 비용은 다음과 같음.

[표 5-3] 총괄원가계산서

(단가: 원)

구분		면세 단체·법인	일반 단체·법인	비고
인건비	기본급	58,061,430	58,061,430	3명(관리자, 사무원, 기간제)
	제수당	13,886,770	13,886,770	
	상여금	6,352,750	6,352,750	
	퇴직급여충당금	5,921,800	5,921,800	
	소계(A)	**84,222,750**	**84,222,750**	
경상경비	수리수선비	0	0	준공 첫해 미적용(AS기간 고려)
	복리후생비	3,360,000	3,360,000	급식비
	인적보험료	7,118,100	7,118,100	정규근로자 인적보험료
	기타경비	2,866,450	2,866,450	여비교통비, 소모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세금과공과, 홍보비
	강사료	34,400,000	34,400,000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소계(B)	**47,744,550**	**47,744,550**	
공과금	전력비	12,533,390	12,533,390	조명, 냉난방 전력사용량 추산
	용수비	226,200	226,200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보험료	53,100	53,100	영업배상책임보험
	지급수수료	6,586,440	6,586,440	전기,소방,위생,무인경비수수료
	소계(C)	**19,399,130**	**19,399,130**	
순원가(D=A+B+C)		151,366,430	151,366,430	
일반관리비(E=D*5%)		7,568,320	7,568,320	
이 윤(F=(D+E)*10%)				비영리법인·단체 위탁시 제외
총지출(G=D+E+F)		**158,934,750**	**158,934,750**	
수입원가	사용료	4,371,020	4,371,020	푸드카페사용료
	총수입(J)	**4,371,020**	**4,371,020**	
총합계(I=G-H)		**154,563,730**	**154,563,730**	
부가가치세		**1,966,182**	**15,456,370**	부가가치세 별도 산정
총원가(K=I+J)		**156,529,912**	**170,020,100**	

주 1) 일반관리비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5% 초과하지 못함.
2) 서천군 복합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 8조(위탁운영 등)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면세 단체·법인 위탁시 부가가치세는 전력비, 지급수수료(소독비 제외), 기타경비 일부(소모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홍보비)에 대해서 10%를 별도 산정함.
4) 일반 단체·법인 위탁시 부가가치세는 위탁관리비(총지출-총수입)를 대상으로 산정함.

2. 세부 산정내역

1) 인건비

○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 4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 가격 작성 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 적정 산정 인원 3명을 대상으로 1인 인건비 적용하여 산정함.

[표 5-4] 인건비 집계표

(단위: 원)

구분	적용 직종	인원	월급여	년급여	금액	비 고
총괄책임자	작업반장	1	3,804,410	45,652,920	45,652,920	
운영관리자	단순노무종사원	1	2,610,880	31,330,600	31,330,600	
단기근로자		1	603,260	7,239,230	7,239,230	
계		3			84,222,750	

[표 5-5] 인건비 단가표

(단위 : 원)

구분	2020년 산정	비고
작업반장	115,918	
단순노무종사원	79,552	

주) 인건비는 2019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한 제조부문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2019년(상)임금조사 보고서

[표 5-6] 총괄책임자 인건비 산출표

(단위: 원)

비 목	금 액	산 출 기 초
1. 기본급	30,138,680	115,918 × 260 일
2. 제수당	8,235,160	
ㄱ.주휴수당	6,027,730	115,918 × 52 주
ㄴ.연차수당	2,207,430	147,162 × 15 일
3. 상여금	3,767,320	2,511,550 × 150 %
4. 퇴직급여충당금	3,511,760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년급여	45,652,920	
월급여	3,804,410	

주 1) 기본금은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작업반장 노임단가 적용
2)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15일 적용
3)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1개월분 임금 적용

[표 5-7] 운영관리자 인건비 산출표

(단위 : 원)

비 목	금 액	산 출 기 초
1. 기본급	20,683,520	79,552 × 260 일
2. 제수당	5,651,610	
ㄱ.주휴수당	4,136,700	79,552 × 52 일
ㄴ.연차수당	1,514,910	100,994 × 15 일
3. 상여금	2,585,430	1,723,620 × 150 %
4. 퇴직급여충당금	2,410,040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
년급여	31,330,600	
월급여	2,610,880	

주 1) 기본금은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단순노무종사원 노임단가 적용
2)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15일 적용
3)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거 1개월분 임금 적용

[표 5-8] 단기근로자 산출표

(단위: 원)

구분	금액	산 출 기 초
기본급	7,239,230	9,944 원 × 14 시간 × 52 주
계	7,239,230	

주 1) 단시간근로자는 주 15시간미만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제외함
2) 단시간근로자 – 단순노무종사원 시급으로 계산함.

2) 경상경비

(1) 수리수선비

○ 수리수선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을 위해 가동하는 시설의 수선비용으로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내구성공구 등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소모품 비용을 의미하며, 문화예술창작공간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1년간 시공업체 AS기간을 고려해 준공 첫해 수리수선비를 미적용하였음

(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업무 조건 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급식비용을 산정하였음

○ 급식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에 종사하는 인력 중 일용직(청소·미화)을 제외한 모든 인력에 대해 적용·산정하였음

[표 5-9] 복리후생비 집계표

(단위 : 원)

구분	합계	비고
복리후생비	3,360,000	
계	3,360,000	

[표 5-10] 복리후생비 산출표

(단위: 명, 원)

구분	금액	인원	금액	비고
급식비	1,680,000	2	3,360,000	
계			3,360,000	

[표 5-11] 복리후생비 1인당 금액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단가	횟수	금액	비 고
급식비	140,000	12	1,680,000	12개월
계			1,680,000	

주) 공무원수당규정 – 식비 기준 변동 14만원

(3) 인적 보험료

○ 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노임장기요양보험 등 인적 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직무별 신분에 따라 연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표 5-12] 인적보험료 집계표

(단위: 원)

구 분		인원	보험료	비고
문화예술 창작공간	총괄책임자	1	4,221,190	
	운영관리자	1	2,896,910	
합 계		2	7,118,100	

○ 업무별·직급별 인적보험료 산출표는 다음과 같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은 퇴직급여충담금을 제외한 급여총액을 배부대상금액으로 적용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를 산정기준으로 적용하였음

[표 5-13] 문화예술창작공간 1인당 인적보험료 산출표

(단위:원)

구분	종류	인원(명)	배부대상금액	요율(%)	금액
총괄책임	국민연금	1	42,141,160	4.500%	1,896,350
	건강보험		42,141,160	3.335%	1,405,400
	산재보험		42,141,160	0.730%	307,630
	고용보험		42,141,160	1.050%	442,480
	임금채권보장보험		42,141,160	0.060%	25,280
	장기요양보험		1,405,400	10.250%	144,050
	소계				4,221,190
운영관리	국민연금	1	28,920,560	4.500%	1,301,420
	건강보험		28,920,560	3.335%	964,500
	산재보험		28,920,560	0.730%	211,120
	고용보험		28,920,560	1.050%	303,660
	임금채권보장보험		28,920,560	0.060%	17,350
	장기요양보험		964,500	10.250%	98,860
	소계				2,896,910
합계					7,118,100

주 1) 급여총액-퇴직급여충당금
2) 202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예술전문서비스업 0.6%, 출퇴근 0.13%

(4) 여비교통·통신비

○ 여비교통·통신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필요한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에 대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배부대상액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 2018년도 기준 공사부문 예정가격작성 활용자료(경비율)을 적용 산출하였음

[표 5-14] 여비교통·통신비 집계표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여비교통·통신비	408,480	

[표 5-15] 여비교통비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배부대상액	배부율(%)	금액	비고
여비교통·통신비	84,222,750	0.485	408,480	
계			408,480	

주) 배부대상액: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합계액

[표 5-16] 경비배부율 산출표

(단위: %)

구분	배 부 율			계	평 균
	공사종류 (조경)	공사규모 (5억 미만)	공사기간 (7~12개월이하)		
여비교통·통신비	0.634	0.456	0.366	1.456	0.485

주 1) 산출기준 : (공사종류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3
2) 상기 경비율은 2018년도 원가구성분석에 의한 경비율을 적용

(5) 소모·사무용품비

○ 소모·사무용품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및 소모품, 소모성 물품에 대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배부 대상액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 2018년도 기준 공사부문 예정가격작성 활용자료(경비율)을 적용 산출하였음

[표 5-17] 소모·사무용품비 집계표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소모·사무용품비	1,561,480	

[표 5-18] 소모·사무용품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배부대상액	배부율(%)	금액	비고
소모·사무용품비	84,222,750	1.854	1,561,480	
계			1,561,480	

주) 배부대상액: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합계액

[표 5-19] 경비배부율 산출표

(단위: %)

구분	배 부 율			계	평 균
	공사종류 (조경)	공사규모 (5억 미만)	공사기간 (7~12개월이하)		
소모·사무용품비	2,169	1.870	1.523	5,562	1.854

주 1) 산출기준 : (공사종류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3
2) 상기 경비율은 2018년도 원가구성분석에 의한 경비율을 적용

(6) 도서인쇄비

○ 도서인쇄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에 필요한 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 제작비등에 대한 비용으로 인건비를 배부대상액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 2018년도 기준 공사부문 예정가격작성 활용자료(경비율)을 적용 산출하였음

[표 5-20] 도서인쇄비 집계표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도서인쇄비	60,640	

[표 5-21] 도서인쇄비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배부대상액	배부율(%)	금액	비고
도서인쇄비	84,222,750	0.072	60,640	
계			60,640	

주) 배부대상액: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합계액

[표 5-22] 경비배부율 산출표

(단위: %)

구분	배 부 율			계	평 균
	공사종류 (조경)	공사규모 (5억 미만)	공사기간 (7~12개월이하)		
도서인쇄비	0.086	0.075	0.055	0.216	0.072

주 1) 산출기준 : (공사종류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3
2) 상기 경비율은 2018년도 원가구성분석에 의한 경비율을 적용

(7) 세금과공과

○ 세금과공과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과 관련해 납부하는 각종 세금과공과금에 대하여 대한건설협회 2018년도 기준 공사부문 예정가격작성 활용자료(경비율)을 적용 산출하였음

[표 5-23] 세금과공과 집계표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세금과공과	475,850	

[표 5-24] 세금과공과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배부대상액	배부율(%)	금액	비고
세금과공과	84,222,750	0.565	475,850	
계			475,850	

주) 배부대상액: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합계액

[표 5-25] 경비배부율 산출표

(단위: %)

구분	배 부 율			계	평 균
	공사종류 (조경)	공사규모 (5억 미만)	공사기간 (7~12개월이하)		
세금과공과	0.571	0.560	0.566	1.697	0.565

주 1) 산출기준 : (공사종류 + 공사규모 + 공사기간) ÷ 3
2) 상기 경비율은 2018년도 원가구성분석에 의한 경비율을 적용

(8) 홍보비

○ 홍보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시중단가를 검토하여 산정하였음

[표 5-26] 홍보비 집계표

(단위:원)

구분	금액	비고
홍보비	360,000	

[표 5-27] 홍보비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단가	횟수	금액	비고
홍보비	30,000	12	360,000	홈페이지 제작관리비

주) 홈페이지 제작관리비용 시중단가 적용

(9) 강사료

○ 강사료는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로서 2018년부터 2019년도 시행한 프로그램들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와 시간을 정해 산정함.

[표 5-28] 강사료 집계표

(단위: 명, 원)

구분	회당 강사료	년 교육횟수	시간	1주당 강사 인원	년 강사료 (원/년)
		주1회 실시			
강사료	80,000	43	2	5	34,400,000

주 1) 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2) 상·하반기 프로그램 - 10달 운영
3) 프로그램 운영규모에 따라 별도 지원예산 협의.

가. 프로그램 이용현황 및 만족도 결과

○ 2019년 운영성과를 토대로 관람객 이용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반적으로 관내 이용객이 73%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는 평균 36.5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운영횟수는 평균 495.5회, 참여인원은 평균 9002명으로 확인됨.

[표 5-29] 연별 관람객 이용실적

구분	계	관내		관외	
		이용객(명)	(%)	이용객(명)	(%)
2015	6,912	5,143	74%	1,769	26%
2016	12,364	8,835	71%	3,529	29%
2017	12,726	9,610	76%	3,116	24%
2018	17,789	12,463	70%	5,326	30%
2019	6,863	5,339	78%	1,524	22%
합계	**56,654**	**41,390**	**73%**	**15,264**	**27%**

주 1) 2019년은 상반기만 프로그램 진행 (2019.01월 ~ 06월까지 운영함)
2)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운영 성과보고서 참조

[표 5-30] 프로그램 운영실적 현황

구분	프로그램 수(개)	운영횟수(회)	참여인원(명)	비고
2015	32	341	5,142	
2016	30	312	5,038	
2017	35	385	8,039	
2018	49	944	17,789	
2019	26	196	6,716	2019년 상반기 반영
합계	146	1982	42,724	
평균	**36.5**	**495.5**	**9002.0**	**2019년 미반영**

주 1) 2019년은 상반기만 프로그램 진행 (2019.01월 ~ 06월까지 운영함)
2) 서천군 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위탁 운영 성과보고서 참조
3) 평균값은 2019년 운영실적 현황 미반영함.

○ 2019년 운영성과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 체험프로그램과 같은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2019년 응답 조사에서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이 높은 점수를 받음.

구분	프로그램	미흡 <——>만족											
		1점		2점		3점		4점		5점		총인원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2018	체험프로그램	11	2%	5	1%	63	14%	94	21%	273	61%	446	100%
2019	체험프로그램	1	2%	1	2%	4	7%	16	26%	39	64%	61	100%
	전시	–	–	3	6%	12	24%	16	31%	20	39%	51	
	공연	–	–	–	–	8	18%	13	30%	23	52%	44	
	교육프로그램	–	–	–	–	–	–	4	29%	10	71%	14	
	동아리'	–	–	–	–	–	–	3	30%	7		10	

주 1) 2018년 하반기에 진행한 1차 설문조사 결과 참조
2) 2019년 상반기에 2차 설문조사 중 점수환산표를 참조하여 결과 산정함.

나. 문화예술창작공간 내 프로그램 실적 현황

○ 2019년 서천국 문화예술창작공간 민간 위탁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상주 동아리인 나무동아리(우드공예), 하프동아리, 미술동아리, 연극동아리 등 12개의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어 활발한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극동아리와 같은 경우 3년동안 활동하면서 극단 미곡으로 발전하여 2종의 연극 공연이 진행됨
- 독서동아리는 지역사회를 주체로 한 문학작품을 리서치하여 북콘서트 진행을 통해 지역사회로 활동범위를 확대함.
- 그 외 상주동아리의 동아리원이 직접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강사프로그램을 만들어 장항에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재능 기부를 통해 공예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도자기 페인팅과 가죽공예를 기본으로 2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지원에 동참하고 있어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전시프로그램과 연계한 콘서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작품에 대한 해석과 지역주민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수행하고 있음

다. 예상 강사 프로그램 진행안

○ 창작공간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창작활동을 하는 지역예술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도록 함.

○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다양한 동아리 연계프로그램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활발한 동아리 활동지원과 그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 진행에 활성화 하도록 함.

[표 5-31] 진행 프로그램 계획안 1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

프로그램	내용	예상 인원	장소	비고
북 콘서트	- 시각예술/공연예술/출판 같은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작가 공모전, 음반 쇼케이스, 북 콘서트를 열어 창작공간의 역할을 수행 - 작가 중심의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적극 동참 지원함.	100명	공연장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예인 콘서트	- 시각예술/공연예술/출판 같은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작가 공모전, 음반 쇼케이스, 북 콘서트를 열어 창작공간의 역할을 수행 - 공연예술 중심의 음반발매 쇼케이스를 열어 창작 지원을 하므로서 창작공간으로서 활동.	100명	공연장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오픈 콘서트	- 시각예술/공연예술/출판 같은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작가 공모전, 음반 쇼케이스, 북 콘서트를 열어 창작공간의 역할을 수행 - 시각예술가의 작품에 대한 해석을 진행함으로서 활발한 활동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교유를 위해 소통할수 있는 예술의 창으로 활동가능.	100명	공연장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

[표 5-32] 진행 프로그램 계획안 2-1 (동아리 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명	내용	예상인원	비고
도자기페인팅	-강사 체험 프로그램 계획(강사료지급) -주 1-2회 진행 예정	1회 10명 연간 600명	재료비 별도
모시공예(퀼트) 프로그램	-문화예술창작공간 상주 동아리인 퀼트 동아리와 연계 협력으로 운영 (강사료 지급) -주민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주 1-2회 진행 예정 -지역내 부족한 아동 문화예술 활동의 보강	1회 10명 연간 500명	재료비 별도
가죽공예 프로그램	-강사 체험 프로그램 계획(강사료지급) -주 1-2회 진행 예정	1회 10명 연간 350명	재료비 별도
젤리플라워	-강사 체험 프로그램 계획(강사료지급) -주 1-2회 진행 예정	1회 10명 연간 100명	재료바 별도
유아미술 이야기	-문화예술창작공간 상주 동아리인 미술동아리와 연계 협력으로 운영 (강사료 지급) -주민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주 1-2회 진행 예정 -지역내 부족한 아동 문화예술 활동의 보강	1회 10명 연간 200명	-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 재료비 별도
인형 만들기 체험	-문화예술창작공간 상주 동아리인 손 옷 만들기 동아리 연계 협력으로 운영 (강사료 지급) -주민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주 1-2회 진행 예정 -지역내 부족한 아동 문화예술 활동의 보강	1회 10명 연간 100명	-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 재료비 별도
아로마 향초 만들기	-문화예술창작공간 상주 동아리인 마실(향초 동아리)과 연계 협력으로 운영 (강사료 지급) -주민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주 1-2회 진행 예정	1회 10명 연간 50명	-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 재료비 별도
엽서꾸미기	-문화예술창작공간 상주 동아리인 미술동아리와 연계 협력으로 운영 (강사료 지급) -주민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및 지역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주 1-2회 진행 예정 -지역내 부족한 아동 문화예술 활동의 보강	1회 10명 연간 200명	-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 - 재료비 별도
스트링아트	강사 체험프로그램으로 계획	1회 10명 연간 50명	재료비 별도

3) 공과금

(1) 전력비

○ 전력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사용되는 기기(건물 냉난방, 조명, 전시시설물 등)의 전력비용을 의미하며, 문화예술창작공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조명 변화와 냉난방기 추가 설비로 인해 리모델링 설계도면과 건축시방서를 기준으로 연간 사용량을 추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일반용(갑)저압 전력요금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하였음

[표 5-33] 전력비 집계표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전력비	12,533,390	추정 전력량 산정

[표 5-34] 전력비 산출표

(단위 : 원)

구분	기본 요금	사용요금			역률 요금	전력 기금	계
		사용량 (kwh)	단가	금액			
1월	646,800	4,349	92.3	401,394	-6,468	38,540	1,080,260
2월	646,800	4,349	92.3	401,394	-6,468	38,540	1,080,260
3월	646,800	4,349	65.2	283,541	-6,468	34,180	958,050
4월	646,800	4,349	65.2	283,541	-6,468	34,180	958,050
5월	646,800	4,349	65.2	283,541	-6,468	34,180	958,050
6월	646,800	4,349	105.7	459,668	-6,468	40,700	1,140,700
7월	646,800	4,349	105.7	459,668	-6,468	40,700	1,140,700
8월	646,800	4,349	105.7	459,668	-6,468	40,700	1,140,700
9월	646,800	4,349	65.2	283,541	-6,468	34,180	958,050
10월	646,800	4,349	65.2	283,541	-6,468	34,180	958,050
11월	646,800	4,349	92.3	401,394	-6,468	38,540	1,080,260
12월	646,800	4,349	92.3	401,394	-6,468	38,540	1,080,260
합계	7,761,600	52,186	1,012	4,402,285	-77,616	447,160	12,533,390

주) 계약 전력을 105㎾로 적용함. (기존 계약전력 55㎾에서 추가로 50㎾ 증설함)

[표 5-35] 한국전력공사 일반용(갑)저압 요금표

구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 요금(원/kWh)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월,9~10월)	겨울철 (11~2월)
일반용(갑)저압	6,160	105.7	65.2	92.3

[표 5-36] 평균 전력 사용량 산출표

(단위: kWh)

구분	사용 기간		시간당 소비전력	사용 시간	년 운영일	년 전력소비량	월 전력소비량	비고
조명	연중	상시	1.67	10	260	4,329	360	
실내기	6개월	하절기 동절기	1.17	8	130	1,214	101	
실외기	6개월	하절기 동절기	36.50	8	130	37,960	3,163	
계						43,503	3,624	
기타 기자재 등 장비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량							725	
월간 전력 추정소비량							4,349	

주 1) 냉난방시설 사용시간은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시간 기준으로 적용
2) 조명 사용시간은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등을 반영하여 10시간 적용
3) 기타 기자재 등 장비 사용에 따른 전력 사용량은 정기 사용량의 20%를 적용함.

[표 5-37] 전력소비량 집계표

(단위: 개, kWh)

구분	수량	시간당 전력소비량	비고
조명	135	1.67	
냉난방설비	6	1.17	
실외기	1	36.50	

주) 수량은 리모델링 설계도면 및 건축시방서 참조

[표 5-38] 전등 4종 135EA 추정 전력 소비량

(단위: 개, kwh)

구 분			형태	사용 시간대	전력 사용량	수량 (EA)	시간당 전력소비량
조명	TYPE A	관급	LED 15W D/L	메인등	0.015	27	0.41
	TYPE B	관급	LED 18W 간접	메인등	0.018	42	0.76
	TYPE C	관급	LED 10.1W 간접	메인등	0.0101	10	0.10
	TYPE D	관급	LED PCB BAR	메인등	0.0072	56	0.40
계						135	1.67

주 1) 월 전력사용량(kwh) = 등기구별 전력사용량 ÷ 1,000
2) TYPE D - LED PCB BAR: 7.2W
3) 수량은 리모델링 산출서 및 건축 시방서 참조

[표 5-39] 냉난방설비, 실외기 추정 전력 소비량

(단위: 개, kwh)

구분	품명	규격	수량	소비전력(kwh)				시간당
				냉방	난방	평균	적용	전력소비량
냉난방 설비	멀티형 냉난방 실내기	360카셋트	4				0.077	0.31
		중정압 덕트	2				0.430	0.86
소계			6					1.17
실외기	복합형 실외기	A	1	18.40	15,50	16.95	16.950	16.95
		B	1	21.70	17.40	19.55	19.550	19.55
소계			1					36.50

주 1) 수량은 리모델링 산출서 및 건축 시방서 참조
2) 실내기 소비전력 삼성전자 홈페이지 참조
3) 복합형 실외기 1대는 2대의 실외기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각각의 소비전력 평균값을 적용하여 시간당 전력소비량 산출함.

(4) 용수비

○ 용수비는 문화예술창작공간에서 사용되는 일반용수에 대한 비용으로, 음용수 및 일반 생활용수에 대하여 상·하수도 요금을 서천군 상하수도 급수 조례에 의거 산정하였음

[표 5-40] 용수비 집계표

(단위: 원)

구분	합계	비고
용수비	226,200	

[표 5-41] 상하수도 사용료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단위	월이용료	횟수	금액	비고
상수도	㎥	14,050	12	168,600	12개월
하수도		3,100	12	37,200	12개월
물이용부담금		1,700	12	20,400	12개월
계				226,200	

주 1) 상하수도요금 = (①구경별 정액요금 + ②업종별 요금) + (2)하수도요금 + (3) 물이용부담금
2)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부과 요율인 톤당 170원 적용

[표 5-42] 상수도 월 이용요금 산출표

(단위: 원)

구분	월사용량 (㎥)	사용료(월)					총 금액
		구경별 정액요금	사용요금				
			용량별구분	사용량(㎥)	단가	금액	
상수도	10	5,950	1-20㎥	10	810	8,100	
계						8,100	14,050

주 1) 구경별 정액요금은 25m/m 요금 적용
2) 상수도 요금은 서천군 상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상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표 5-43] 하수도 월 이용요금 산출표

(단위: 원)

구분	월사용량 (㎥)	사용료(월)				총 금액
		용량별구분	사용량(㎥)	단가	금액	
하수도	10	1-20㎥	10	310	3,100	3,100

주) 하수도 요금은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상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

[표 5-44] 물 이용부담금 산출표

(단위: 원)

구분	사용료(톤/월)	사용량	금액	비고
물이용부담금	170	10	1,700	

주)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부과 요율인 톤당 170원 적용

[표 5-45] 연별 평균 월 사용량 산출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값
월사용량(㎥)	9.75	10.42	10.67	10.28

주) 2017년-2019년 3년 월평균 사용량 적용, 서천군 상수도 급수조례의 일반용 준용

[표 5-46] 서천군 상하수도 이용료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단위	월 사용량		
		단위당 사용료	초과요금 계산식	
상수도	㎥	810	0-20 ton×810 20-50 ton×1010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이하
하수도	㎥	310	0-20 ton×310 20-50 ton×380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이하

[표 5-47] 2017년 상하수도 요금

(단위: ㎥, 원)

월별	사용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합계
2017.01	7	11,130	2,100	1,120	14,350
2017.02	6	10,350	1,800	960	13,110
2017.03	4	8,790	1,200	640	10,630
2017.04	6	10,350	1,800	960	13,110
2017.05	6	10,350	1,800	960	13,110
2017.06	11	14,250	3,300	1,760	19,310
2017.07	16	18,150	4,800	2,560	25,510
2017.08	13	15,810	3,900	2,080	21,790
2017.09	10	13,470	3,000	1,600	18,070
2017.10	10	13,470	3,000	1,600	18,070
2017.11	13	16,480	4,030	2,080	22,590
2017.12	15	18,100	4,650	2,400	25,150

[표 5-48] 2018년 상하수도 요금

(단위: ㎥, 원)

월별	사용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합계
2018.01	8	12,790	2,550	1,310	16,650
2018.02	7	11,620	2,170	1,120	14,910
2018.03	6	11,120	1,910	1,050	14,080
2018.04	7	11,620	2,170	1,190	14,980
2018.05	10	14,050	3,100	1,700	18,850
2018.06	9	13,240	2,790	1,530	17,560
2018.07	19	21,340	5,890	3,230	30,460
2018.08	10	14,050	3,100	1,700	18,850
2018.09	14	17,290	4,340	2,380	24,010
2018.10	11	14,860	3,410	1,870	20,140
2018.11	14	17,290	4,340	2,380	24,010
2018.12	10	14,050	3,100	1,700	18,850

[표 5-49] 2019년 상하수도 요금

(단위: ㎥, 원)

월별	사용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합계
2019.01	12	15,670	3,720	2,040	21,430
2019.02	11	14,860	3,410	1,870	20,140
2019.03	15	18,100	4,650	2,550	25,300
2019.04	15	18,100	4,650	2,550	25,300
2019.05	15	18,100	4,650	2,550	25,300
2019.06	12	15,670	3,720	2,040	21,430
2019.06	28	30,230	9,240	4,760	44,230
2019.07	–	–	–	–	–
2019.08	2	6,760	310	170	7,240
2019.09	2	7,570	620	340	8,530
2019.10	4	9,190	1,240	680	11,110
2019.11	10	14,050	3,100	1,700	18,850
2019.12	2	7,570	620	340	8,530

주) 2019.06월 상하수도 요금 미납

(3) 보험료

○ 보험료는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영업배상책임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8년 보험료 납입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함.

[표 5-50] 보험료 산출표

(단위: 원)

구분	단가	비고
영업배상책임보험	53,100	삼성화재

주) 2018년 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함.

(4) 지급수수료

○ 지급수수료는 문화예술창작공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소방안전점검 대행 수수료, 기타 지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18년 실제 납부고지서를 기준으로 적용 산출하였음

[표 5-51] 지급수수료 집계표

(단위 : 원)

구분	단가	횟수(회)	금액	비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101,600	12	1,219,200	
소방관리시설비	177,270	12	2,127,240	
위생소독관리비	120,000	12	1,440,000	
무인경비용역비	150,000	12	1,800,000	에스원
계	548,870		6,586,440	

주 1) 2020년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표 기준
2) 소방관리시설비, 기타지급수수료 2018년도 납부고지서 참조
3) 무인경비용역비는 서천군 장항 도서관 금액 기준 적용

4) 사용료

○ 수입추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사용료 등 부과·징수 기준으로 건물 내 유료 운영이 가능한 푸드카페의 임대료를 산정하여 사용료를 산정하였음

[표 5-52] 사용료 산출표

(단위 : 원)

구분	합계	비고
푸드카페 사용료	4,371,020	

주) 연간사용료(대부료)= 재산가격(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 × 사용료율

[표 5-53] 사용료 집계표

(단위 : 원)

구분	면적(㎡)	재산가액	사용요율	소계
푸드카페	147.07	145,700,910	3%	4,371,020

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0조 대부료의 요율 적용 - 3%

[표 5-54] 시설별 면적 집계표

(단위 : ㎡)

구분	면적(㎡)	비고
연면적	980.1	
전용면적	692.79	
공용면적	287.31	연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푸드카페	147.07	
건축면적	1005.3	
대지면적	2417	
부지면적	2417	

주) 시설별 면적 확인(건축사사무소 협선) - 리모델링 진행 중 시설별 면적 변동

[표 5-55] 연면적당 평가금액 집계표

(단위: 원)

구분	연면적당 금액	비고
시가표준액	157,000	면적당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연면적
공시지가	220,300	

주) 국토교통부 시가표준액 및 공시지가 알림서비스 참조

5) 부가가치세

○ 면세 단체·법인과 같은 경우 매입 부가가치세가 발행하는 항목에 대해 별도로 매입 부가가치세를 산정하고, 총괄원가계산서에 기재함.

[표 5-56] 부가가치세 집계표

(단위: 원)

구분		금액	합계
기타경비	소모·사무용품비	156,140	198,200
	도서인쇄비	6,060	
	홍보비	36,000	
전력비		1,253,330	1,253,330
지급수수료	전기안전관리대행	121,920	514,640
	소방관리시설비	212,720	
	무인경비용역비	180,000	
계			1,966,170

주 1) 기타경비 일부(소모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홍보비) 매입부가가치세 10% 포함
2) 전력비 매입 부가가치세 10% 포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1 - 소독업 면세사업자로 부가가가치세 면세
4) 지급수수료 일부(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소방관리시설비, 무인경비용역비)에 대해서 매입 부가가치세 10% 제외

참고자료

1. 제조부문 시중노임단가

(단위 : 원)

업 종		직종코드 및 직종명	2019. 8월 조사노임	2019. 8월 변동계수	2019. 3월 조사노임	2018. 9월 조사노임
조립작업		98.전자제품조립원	82,567	20.0	79,306	74,250
		99.전기기계조립원	90,540	25.7	87,415	83,555
		100.고무플라스틱제품조립원	88,230	16.5	89,517	-
		101.경기계조립원	86,626	20.9	85,671	80,158
		102.중기계조립원	103,605	16.1	100,018	84,613
		103.통신기계조립원	*	*	*	85,450
		104.벨트콘베이어작업원	*	*	*	79,289
		105.부품조립원	79,162	17.4	76,928	76,358
제품검사·마감		106.제품검사및조정원	85,655	21.1	85,546	78,509
		107.상표부착원	80,526	16.5	78,711	-
포장		108.기계물품포장원	83,903	18.7	82,682	74,648
		109.수동물품포장원	78,949	16.8	78,772	73,562
		110.목재포장원	89,198	21.3	89,845	75,871
		111.철강포장원	*	*	*	82,305
품질관리	화학공학	112.화학공학품질관리사	122,269	21.8	120,841	114,416
		113.화학공학품질관리원	106,010	20.4	103,406	96,537
		114.화학공학제품시험원	104,964	18.4	106,331	99,507
	금속재료	115.금속재료품질관리사	106,906	11.8	107,933	109,833
		116.금속재료품질관리원	94,702	17.1	95,434	96,634
		117.금속재료제품시험원	96,078	26.5	97,648	*
	전기·전자·기계	118.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사	116,090	21.6	113,032	114,930
		119.전기·전자및기계품질관리원	101,534	24.8	99,022	97,270
		120.전기·전자및기계제품시험원	99,083	25.9	97,736	97,816
	기타공학	121.기타공학품질관리사	119,879	28.0	117,791	*
		122.기타공학품질관리원	102,113	21.4	98,940	87,840
		123.기타공학제품시험원	101,958	21.9	99,046	92,699
하역·적재·이송		124.제품하역적재원	86,009	18.7	85,336	83,074
		(125~126)특수차운전원(통합)	94,140	20.9	93,292	88,018
		125.내부특수차운전원	94,160	22.0	93,542	-
		126.외부특수차운전원	94,072	16.8	92,422	-
단순노무		127.단순노무종사원	79,552	16.6	78,023	72,020
안 전		128.안전관리사	115,011	22.5	115,525	115,509
작업반장		129.작업반장	115,918	30.2	115,049	108,234
전체평균			94,836		94,631	88,503

주 : (125~126)특수차운전원의 통합단가는 금년(2019년)까지만 발표하고 2020년 이후에는 발표하지 아니함.

자료: 2019년(하)임금조사 보고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 보험료 산정요율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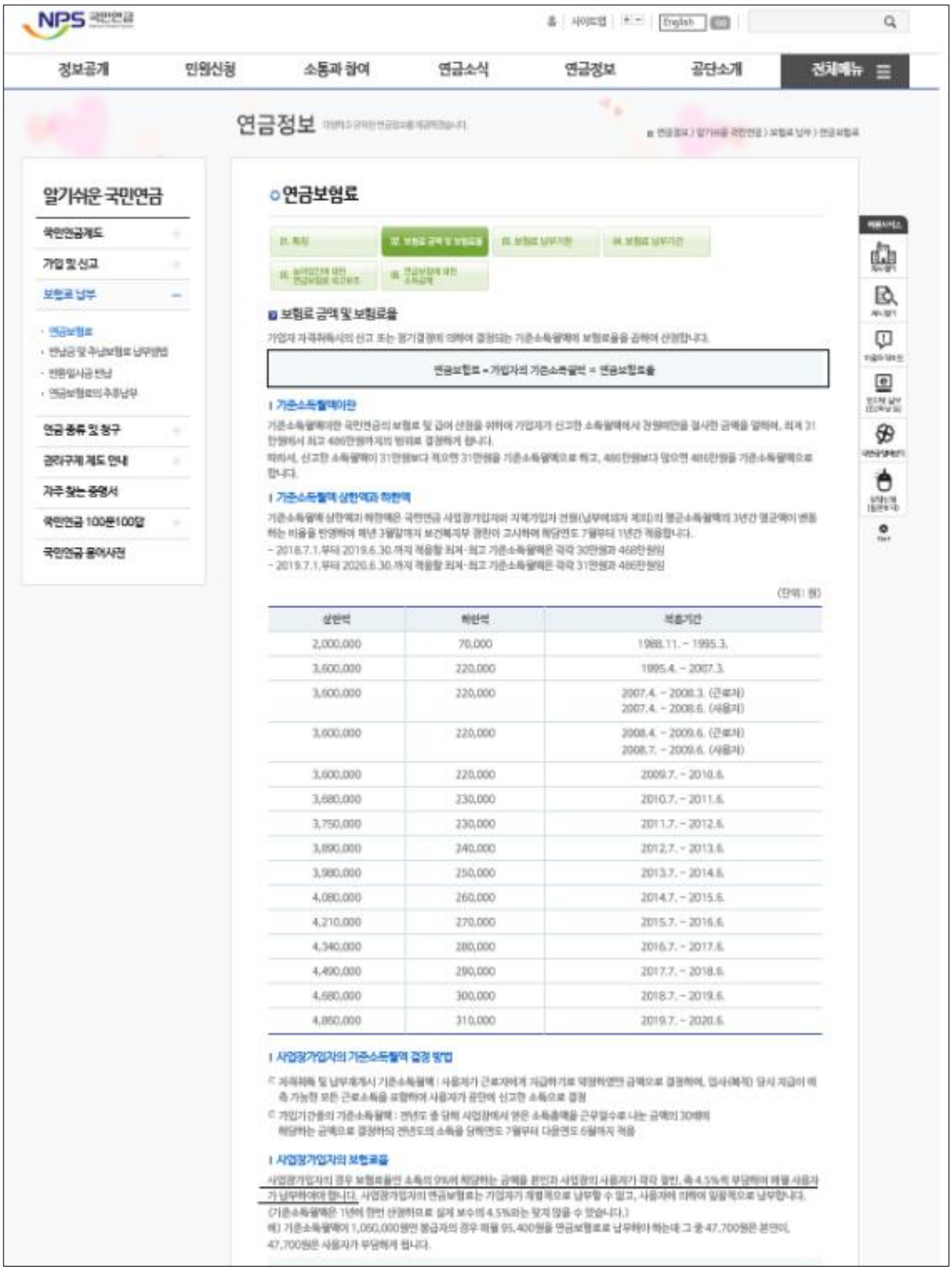

NPS 국민연금

English

정보공개 | 민원신청 | 소통과 참여 | 연금소식 | 연금정보 | 공단소개 | 전체메뉴

연금정보

알기쉬운 국민연금

- 국민연금제도
- 가입 및 신고
- 보험료 납부
  - 연금보험료
  -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 반환일시금 반납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연금 종류 및 청구
- 권리구제 제도 안내
- 자주 찾는 증명서
- 국민연금 100문100답
- 국민연금 용어사전

○ 연금보험료

■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의 보험료율을 공하여 산정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제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전원비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1만원에서 최고 468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1만원보다 적으면 3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68만원보다 많으면 46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18.7.1.부터 2019.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0만원과 468만원임
- 2019.7.1.부터 2020.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31만원과 486만원임

(단위 : 원)

상한액	하한액	적용기간
2,000,000	70,000	1988.11. ~ 1995.3.
3,600,000	220,000	1995.4. ~ 2007.3.
3,600,000	220,000	2007.4. ~ 2008.3. (근로자) 2007.4. ~ 2008.6. (사용자)
3,600,000	220,000	2008.4. ~ 2009.6. (근로자) 2008.7. ~ 2009.6. (사용자)
3,600,000	220,000	2009.7. ~ 2010.6.
3,680,000	230,000	2010.7. ~ 2011.6.
3,750,000	230,000	2011.7. ~ 2012.6.
3,890,000	240,000	2012.7. ~ 2013.6.
3,980,000	250,000	2013.7. ~ 2014.6.
4,080,000	260,000	2014.7. ~ 2015.6.
4,210,000	270,000	2015.7. ~ 2016.6.
4,340,000	280,000	2016.7. ~ 2017.6.
4,490,000	290,000	2017.7. ~ 2018.6.
4,680,000	300,000	2018.7. ~ 2019.6.
4,860,000	310,000	2019.7. ~ 2020.6.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고시

[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 다양한 복지서비스 복지로 복지로에서 한 번에 |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8월 22일(목) 건정심 종료 후		
배 포 일	2019. 8. 22. / (총 6매)		
보험정책과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과 장	정 윤 순	044-202-2710
	담당자	박 정 우	044-202-2705
예비급여과 (전립선 초음파 급여화 등)	과 장	손 영 래	044-202-2670
	담당자	문 달 해	044-202-2667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2) -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19년 6.46%→ '20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년 189.7원 → 195.8원으로 함

▣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1 -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자료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산재보험]

2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

[별지]

1.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4. 건 설 업	36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5. 운수·창고·통신업	
석회석·금속·비금속 · 기타광업	57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2. 제조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식료품 제조업	16	통신업	9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6. 임 업	58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7. 어 업	28
출판 · 인쇄 · 제본업	10	8. 농 업	2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9. 기타의 사업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기타의 각종사업	9
금속제련업	10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부동산 및 임대업	7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3.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8	0. 금융 및 보험업	6
		* 해외파견자: 14/1,000	

2. 2020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전 업종 1.3/1,000 동일

* 사업종류의 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을 규정한 사업종류 예시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가입·납부서비스-사업종류 검색-연도별 산재보험료율표에 게재

자료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2019.12.27)

[고용보험]

자료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등 알아보기 - 고용보험료 알아보기 고용보험료율 고시

[임금채권보장보험]

홈페이지 이용문의 | 자주묻는 질문 | 서식자료마당

근로복지넷

검색어

생활안정자금 임금채권 여성복지/콘도예약 문화예술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기업복지컨설팅 이벤트

근로자 휴양콘도 | 사업소개 | 처리절차 | 콘도 둘러보기 | 객실정보 알아보기 | 지역 행사일정

공공직장어린이집 | 사업소개 | 처리절차

여성복지/콘도예약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유와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여 성아파트 어린이집지원 등의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개
- 일반체당금 지급
- 소액체당금 지급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참여마당 | 이용후기 | 뉴스레터 | 행사일정

바로가기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범위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체당금"이라고 함) 해주는 제도

※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체당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 안내)

사업주 부담금

-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함(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

※ 부담금 비율

'98년	'99년	'00년	'01 - '02년	'03 - '04년	'05 - '09년	'10년 이후	'16년 이후
2/1,000	0.3/1,000	0.9/1,000	0.5/1,000	0.3/1,000	0.4/1,000	0.8/1,000	0.6/1,000

※ 사업주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시 함께 납부함

- 부담금의 경감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 · 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변제금 회수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여 변제금을 회수함
- 대위범위 : 미지급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 중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 체당금액과 이자 및 청구권 대위행사에 소요되는 법정 제비용을 합한 금액

부정수급 징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의 배액을 징수하게 되고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됨
-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 진술 · 증명 · 서류제출 등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수급자와 연대하여 반환 책임을 지게 됨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5천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3. 경비율

[공사규모별]

<표 2-1> 2018년도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 공사규모별

(단위 : 천원, %)

구 분	공사규모별			
	5억미만		5억이상 - 30억미만	
	평 균	구 성 비	평 균	구 성 비
공 사 원 가	351,825		1,096,464	
- 재료비	120,138		332,818	
- 노무비	65,445		159,658	
- 외주비	111,656		459,768	
(재료비 + 노무비)	185,584	100.0	492,477	100.0
- 경비	54,585	29.413	144,219	29.284
1. 전력비	179	0.096	718	0.146
2. 수도광열비	**320**	**0.173**	**885**	**0.180**
3. 운반비	1,625	0.876	4,004	0.813
4. 기계경비	23,176	12.488	52,441	10.648
5. 특허권사용료	19	0.010	22	0.004
6. 기술료	13	0.007	143	0.029
7. 연구개발비	16	0.009	210	0.043
8. 품질관리비	30	0.016	98	0.020
9. 가설비	313	0.169	1,103	0.224
10. 지급임차료	1,234	0.665	3,437	0.698
11. 보험료	3,291	1.773	9,350	1.899
12. 복리후생비	**2,764**	**1.489**	**8,296**	**1.685**
13. 보관비	7	0.004	15	0.003
14. 외주가공비	3,138	1.691	12,660	2.571
15. 안전관리비	1,811	0.976	3,967	0.806
16. 소모 · 사무용품비	**3,470**	**1.870**	**8,069**	**1.638**
17.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847**	**0.456**	**1,887**	**0.383**
18. 세금과공과	**1,039**	**0.560**	**2,484**	**0.504**
19. 폐기물처리비	565	0.305	1,753	0.356
20. 도서인쇄비	**139**	**0.075**	**301**	**0.061**
21. 지급수수료	**3,692**	**1.989**	**10,813**	**2.196**
22. 환경보전비	126	0.068	252	0.051
23. 보상비	21	0.011	326	0.066
24. 안전점검비	101	0.054	232	0.047
25. 퇴직공제부금비	361	0.195	886	0.180
26. 기타법정경비	530	0.286	2,444	0.496
27. 감가상각비	162	0.087	379	0.077
28. 하자보수비	124	0.067	554	0.113
29. 현장관리비	5,471	2.948	16,490	3.348

[공사기간별]

<표 3-1> 2018년도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 공사기간별

(단위 : 천원, %)

구 분	공사기간별			
	6개월이하		6개월초과 - 12개월이하	
	평 균	구 성 비	평 균	구 성 비
공 사 원 가	791,337		1,767,329	
- 재료비	270,235		498,658	
- 노무비	107,221		201,586	
- 외주비	320,594		869,500	
(재료비 + 노무비)	377,456	100.0	700,244	100.0
- 경비	93,287	24.715	197,585	28.217
1. 전력비	418	0.111	1,395	0.199
2. 수도광열비	**649**	**0.172**	**1,441**	**0.206**
3. 운반비	2,433	0.645	4,541	0.649
4. 기계경비	27,486	7.282	54,671	7.807
5. 특허권사용료	10	0.003	1	0.000
6. 기술료	81	0.021	267	0.038
7. 연구개발비	245	0.065	159	0.023
8. 품질관리비	25	0.007	230	0.033
9. 가설비	816	0.216	1,477	0.211
10. 지급임차료	1,902	0.504	5,547	0.792
11. 보험료	6,704	1.776	14,523	2.074
12. 복리후생비	**5,110**	**1.354**	**12,033**	**1.718**
13. 보관비	4	0.001	20	0.003
14. 외주가공비	10,406	2.757	18,564	2.651
15. 안전관리비	2,493	0.660	5,620	0.803
16. 소모 - 사무용품비	**5,565**	**1.474**	**10,667**	**1.523**
17.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1,263**	**0.335**	**2,564**	**0.366**
18. 세금과공과	**1,832**	**0.485**	**3,962**	**0.566**
19. 폐기물처리비	1,423	0.377	2,827	0.404
20. 도서인쇄비	**213**	**0.056**	**384**	**0.055**
21. 지급수수료	**7,129**	**1.889**	**17,399**	**2.485**
22. 환경보전비	163	0.043	291	0.042
23. 보상비	87	0.023	5,212	0.744
24. 안전점검비	256	0.068	324	0.046
25. 퇴직공제부금비	417	0.110	1,029	0.147
26. 기타법정경비	2,509	0.665	2,704	0.386
27. 감가상각비	182	0.048	405	0.058
28. 하자보수비	310	0.082	587	0.084
29. 현장관리비	13,156	3.485	28,741	4.104

1 페이지

[공사종류별]

<표 1-2> 2018년도 완성공사원가통계(경비율)

(단위:천원,%)

구 분	공사종류별			
	산업설비		조경	
	평균	구성비	평균	구성비
공사원가	8,201,332		1,618,410	
- 재료비	3,025,540		352,778	
- 노무비	648,835		181,899	
- 외주비	3,619,604		879,420	
(재료비 + 노무비)	3,674,375	100.0	534,677	100.0
- 경비	907,354	24.694	204,313	38.212
1. 전력비	3,479	0.095	1,068	0.200
2. 수도광열비	**67,727**	**1.843**	**1,519**	**0.284**
3. 운반비	9,517	0.259	8,930	1.670
4. 기계경비	121,772	3.314	81,939	15.325
5. 특허권사용료	0	0.000	0	0.000
6. 기술료	0	0.000	22	0.004
7. 연구개발비	27,699	0.754	3,931	0.735
8. 품질관리비	568	0.015	22	0.004
9. 가설비	1,245	0.034	422	0.079
10. 지급임차료	37,516	1.021	5,075	0.949
11. 보험료	58,919	1.604	12,914	2.415
12. 복리후생비	**84,308**	**2.294**	**16,464**	**3.079**
13. 보관비	28	0.001	36	0.007
14. 외주가공비	1,213	0.033	1,508	0.282
15. 안전관리비	29,933	0.815	4,970	0.930
16. 소모 · 사무용품비	**32,064**	**0.873**	**11,598**	**2.169**
17. 여비 · 교통비 · 통신비	**14,782**	**0.402**	**3,387**	**0.634**
18. 세금과공과	**13,060**	**0.355**	**3,052**	**0.571**
19. 폐기물처리비	5,109	0.139	688	0.129
20. 도서인쇄비	**2,979**	**0.081**	**461**	**0.086**
21. 지급수수료	**255,883**	**6.964**	**17,707**	**3.312**
22. 환경보전비	1,018	0.028	283	0.053
23. 보상비	19,692	0.536	278	0.052
24. 안전점검비	2,193	0.060	382	0.071
25. 퇴직공제부금비	2,599	0.071	1,883	0.352
26. 기타법정경비	941	0.026	1,775	0.332
27. 감가상각비	1,490	0.041	988	0.185
28. 하자보수비	8,693	0.237	1,584	0.296
29. 현장관리비	102,928	2.801	21,426	4.007

4. 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약칭: 공무원수당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48호, 2020. 1. 7.,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 - 201 - 8401

제6장의2 실비변상 등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 7. 21., 2013. 1. 9., 2016. 6. 14., 2016. 11. 29., 2020. 1. 7.>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제30348호,202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11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5. 전력비고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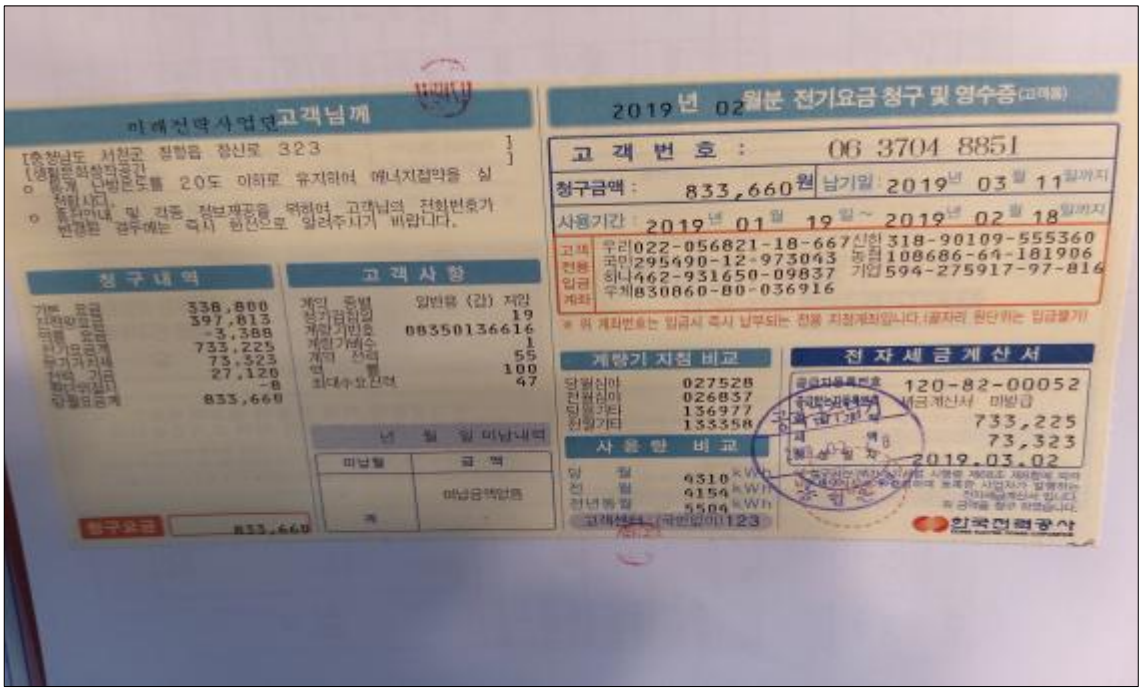
미래전력사업단 고객님께
2019년 02월분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고 객 번 호 : 06 3704 8851
청구금액 : 833,660원
납기일 : 2019년 03월 11일까지
사용기간 : 2019년 01월 19일 ~ 2019년 02월 18일까지
청 구 내 역
고 객 사 항
계량기 지침 비교
사 용 량 비교
전 자 세 금 계 산 서
120-82-00052
733,225
73,323
2019.03.02
한국전력공사

미래전력사업단 고객님께
2019년 06월분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고 객 번 호 : 06 3704 8851
청구금액 : 584,490원
납기일 : 2019년 07월 10일까지
사용기간 : 2019년 05월 19일 ~ 2019년 06월 18일까지
청 구 내 역
고 객 사 항
계량기 지침 비교
사 용 량 비교
전 자 세 금 계 산 서
120-82-00052
514,069
51,407
2019.07.02
한국전력공사

6.영업배상보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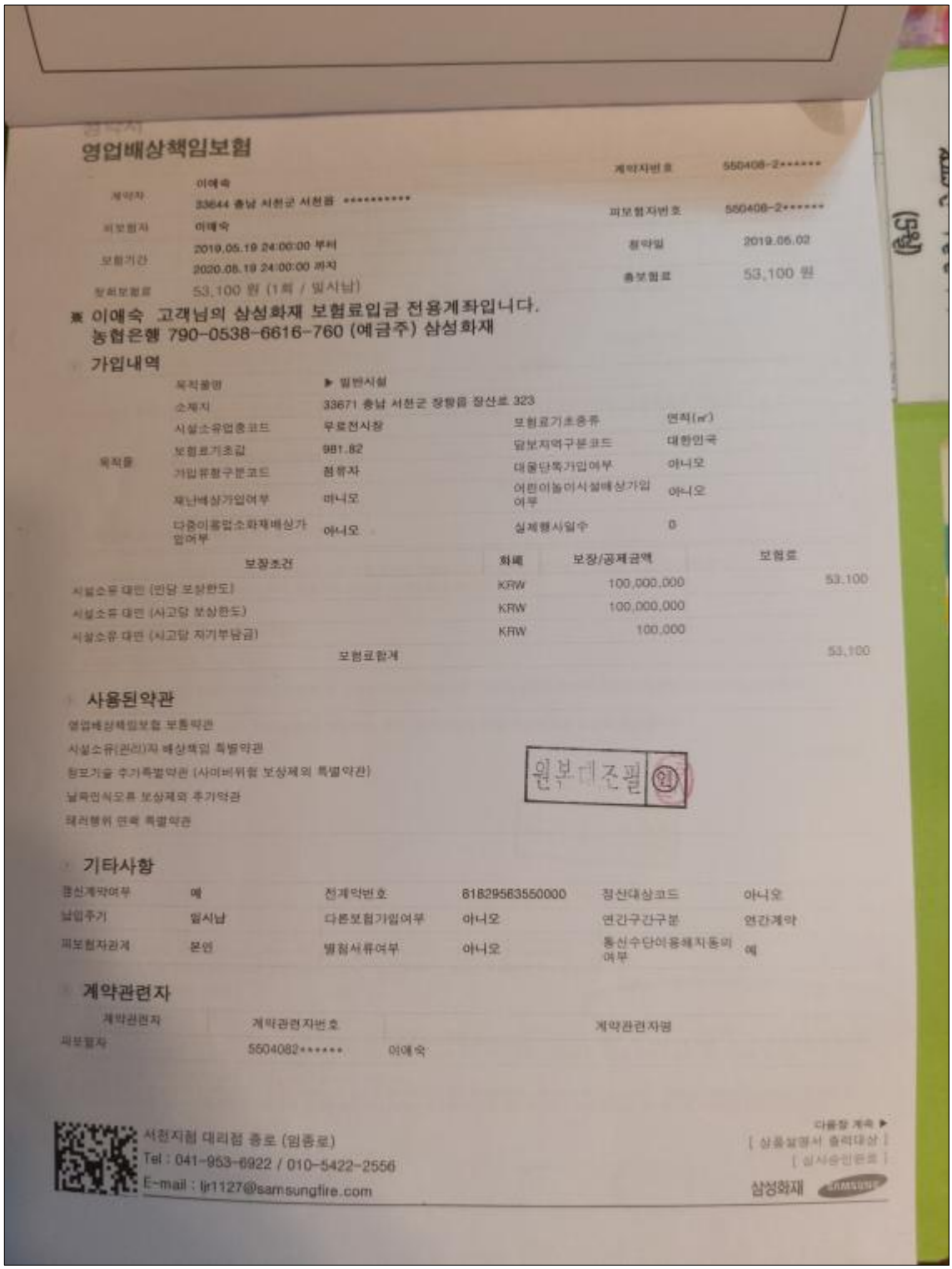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자	이애숙 336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	계약자번호	550408-2******
피보험자	이애숙	피보험자번호	550408-2******
보험기간	2019.05.19 24:00:00 부터 2020.05.19 24:00:00 까지	청약일	2019.05.02
정회보험료	53,100 원 (1회 / 일시납)	총보험료	53,100 원

※ 이애숙 고객님의 삼성화재 보험료입금 전용계좌입니다.
농협은행 790-0538-6616-760 (예금주) 삼성화재

가입내역

목적물명	▶ 일반시설		
소재지	33671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 323		
목적물	시설소유업종코드	무료전시장	보험료기초종류	면적(㎡)
	보험료기초값	981.82	담보지역구분코드	대한민국
	가입유형구분코드	점유자	대물단독가입여부	아니오
	재난배상가입여부	아니오	어린이놀이시설배상가입여부	아니오
	다중이용업소화재배상가입여부	아니오	실제행사일수	0

보장조건	화폐	보장/공제금액	보험료
시설소유 대인 (인당 보상한도)	KRW	100,000,000	53,100
시설소유 대인 (사고당 보상한도)	KRW	100,000,000	
시설소유 대인 (사고당 자기부담금)	KRW	100,000	
보험료합계			53,100

사용된약관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날씨인식오류 보상제외 추가약관
해리행위 면책 특별약관

원본대조필 (인)

기타사항

갱신계약여부	예	전계약번호	81829563550000	정산대상코드	아니오
납입주기	일시납	다른보험가입여부	아니오	연간구간구분	연간계약
피보험자관계	본인	별첨서류여부	아니오	통신수단이용해지동의여부	예

계약관련자

계약관련자	계약관련자번호	계약관련자명
피보험자	5504082******	이애숙

서천지점 대리점 종로 (임종로)
Tel : 041-953-6922 / 010-5422-2556
E-mail : ljr1127@samsungfire.com

다음장 계속 ▶
[상품설명서 출력대상]
[심사승인번호]
삼성화재

7. 상하수도요금영수증

05월 검침분 2019년 06월분 상·하수도요금영수증

사용기간 2019.04.25-2019.05.24

전자납부번호 44770-01918-00000382-3

수용가번호 4660 001 001 0385 55 3

납기일 2019.07.01 21430

납기후 2019.07.31 22060

성명: 서천군수(전략사업단) 주소: 장항읍 창선1리 308 (생활창작공간)

수전번호	상수도업종	하수도업종	지하수업종	가구수	구경
0385	일반용	일반용		1	25

구분	당월지침	전월지침	사용량	사용료 구경별요율	할인액 감면액	고지금액
상수도요금	555	543	12	9720 5950	0 0	15670
하수도요금			12	3720	0 0	3720
물이용부담금			12	2040	0 0	2040

●관리담당 전화번호 ☎041)950-6802~6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전자납부번호 44770-01918-00000382-7

검침원: 김연구

서천군

납기일 06. 20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시중은행,수협,새마을금고,농협,신협), 및 전국우체국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요.

(수납기관 보관용)

2019년 06월분 상·하수도요금수납원부

2019.07.01

성명: 서천군수(전략사업단) 납기분

수용가번호 4660-001-001-0385-55-3

구분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상수도요금	15670	16130
하수도요금	3720	3830
물이용부담금	2040	2100
합계	21430	22060

2019년 06월 12일

서천군

수납인

(수납은행 보관용)

8. 소방시설점검용역비

청 구 서

■ 건 명 : 문화예술창작공간 소방시설점검용역

■ 계약금액 : 금195,000원(금일십구만오천원)
■ 청구금액 : 금195,000원(금일십구만오천원)

위 사항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합니다.

2019년 06월 ㅋ 일

* 입금은행 : 농협
* 계좌번호 : 351-0422-3350-93
* 예 금 주 : (주)보광소방방재
* 대표이사 : 박 홍 림

인형극단 또봄 귀하

소 방 시 설 자 체 점 검 기 록 부

(지상1층. 1개동 연면적 : 980.1㎡) (양호○, 요정비△, 불량×)

구 분	항 목		수 량	점검결과	비 고 란
1. 소 화 기 구(소화기)	ABC 3.3KG		8	○	
조치내용					
2. 경 보 설 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화재수신기		1	○	P형1급5회중2회
	발신기,경종,표시등		2	○	
	차동식감지기		10	○	
	정온식감지기		1	○	
	연기식감지기		26	○	
	시각경보기		6	○	시각경보기 전원반:5A
조치내용					
3. 피 난 설 비 (유도등. 유도표지 및 피난안내도)	유도등	피난구(소형)	25	○	
		복도통로	6	○	
	복도통로유도표지		6	○	
	피난안내도		7개소	○	
조치내용					
4. 기 타 시 설	비 상 구		13개소	○	주,부출입구 포함
	방염물품		유	○	방염커튼
조치내용					

201 ρ 년 6 월 26 일

점 검 자 : ㈜보광소방방재 (서명)

확 인 자 : (서명)

문화예술창작공간

9. 위생소독관리비

(고객용)

Service Report

계약일	2015년 06월 30일
계약자	송용균

계약 사항

계약시설물 (m²)	계약대상	일반 방제	금액	방제 기기	기종 및 수량		금액	계약금액
장항문화예술창작공간 (약300평)	바퀴/개미		120,000		0 천연살충제 0 0	0 0 0	0 0 0	120,000

고객 정보

고객명	장항문화예술창작공간	사업자번호	313-80-08502	대표자	이애숙
주 소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산로323	담당부서	관장	담당자	이애숙
연락처	Tel. 041-956-3161 Fax.	C.P.	010-5403-5798	e-mail.	alsom05@naver.com

결제 사항

수금 월분	입금표 No.	총수금액	금월금액	미수금액	미수월 및 비고	수금방법
2019년 6월		120,000	120,000			건납 송금

서비스사항

작업 시작	작업 종료	서비스 일자	작업자(연락처)
12 : 50	13 : 15	2019년 06월 12일	송용균(010-4287-3953)

모니터링 (비래해충&구서)

	파리	모기	초파리	나방	나방 파리	애기집 파리	날파리	깔따구	미동정	計
1										
2										
3										
4										
5										
6										
7										
8										
9										
10										
計										

(정기-매월) 서비스 내용

문화예술창작공간의 소독 및 구충

특기사항 및 방제정보

301-0133-9609-11 농협 송용균(이레P&R)

쥐독먹이제 모니터링				
흔적	섭식	교체	재배치	추가

트랩 모니터링			
포획	교체	재배치	추가

서비스 확인 서명란

작업자	고객
송 용 균	

ire

10. 홍보비(홈페이지 제작관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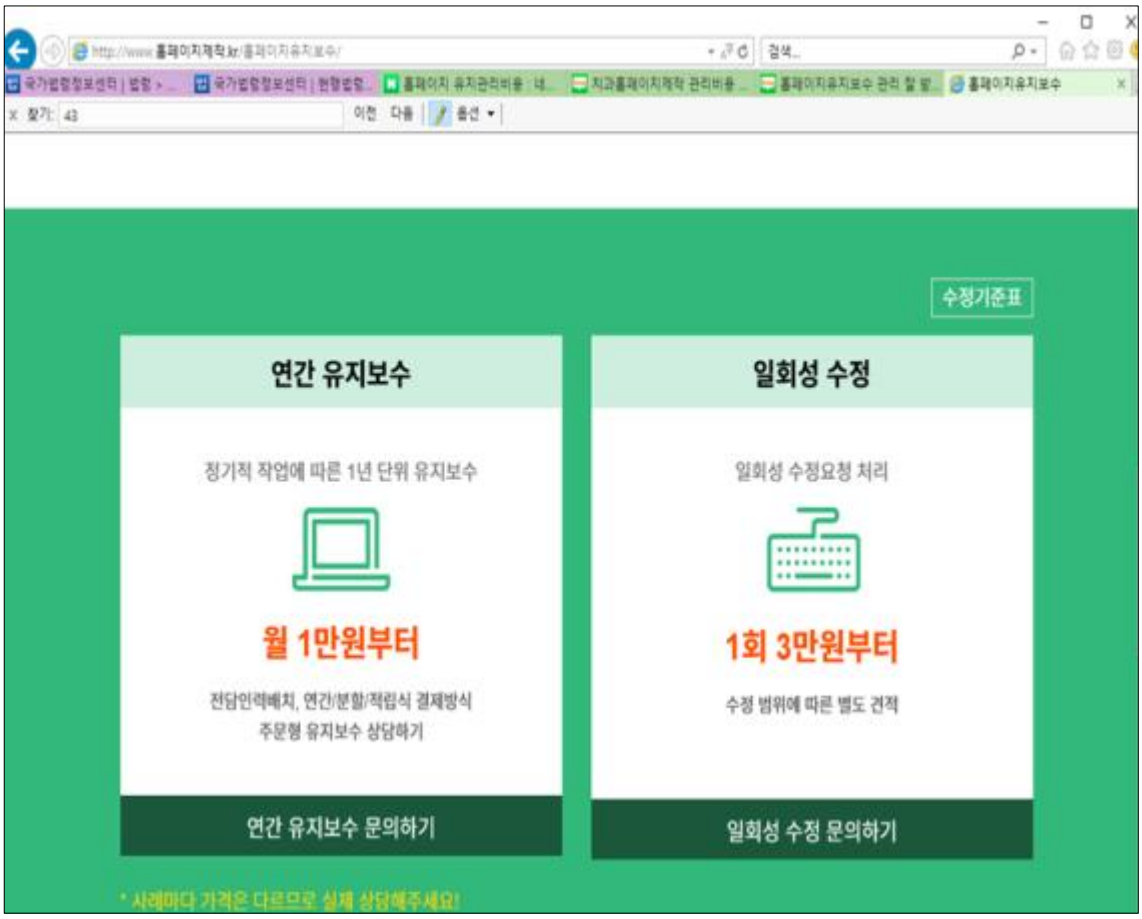

11.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12. 실내기 소비전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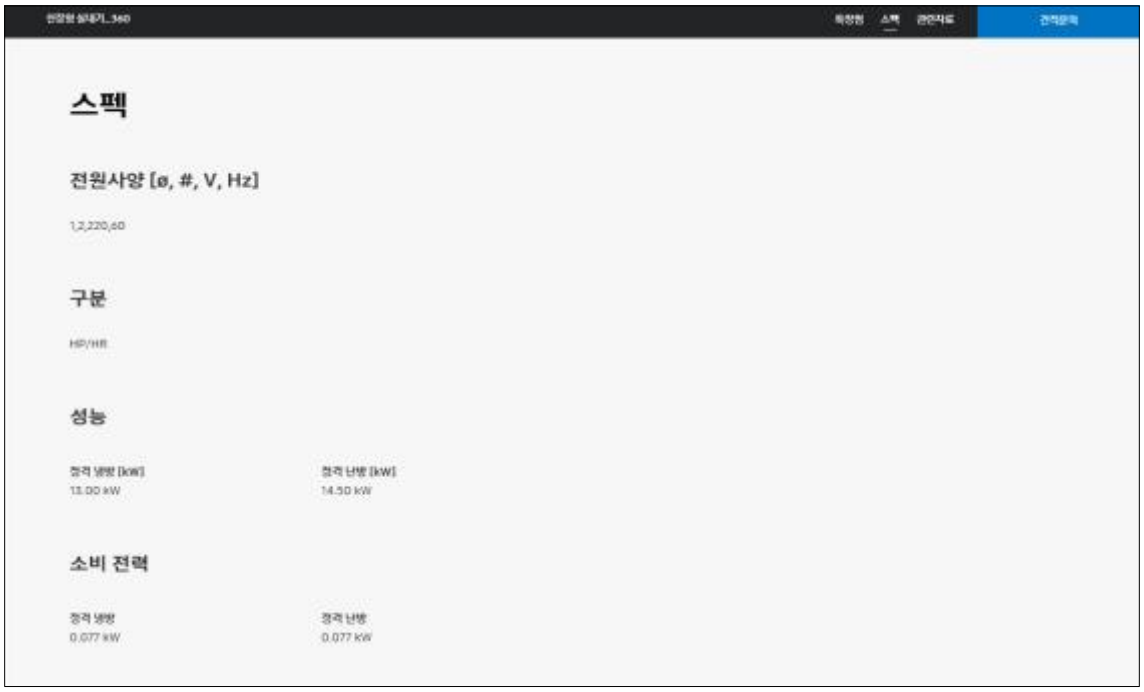
스펙
전원사양 [ø, #, V, Hz]
1,2,220,60
구분
HP/HR
성능
정격 냉방 [kW]
13.00 kW
정격 난방 [kW]
14.50 kW
소비 전력
정격 냉방
0.077 kW
정격 난방
0.077 k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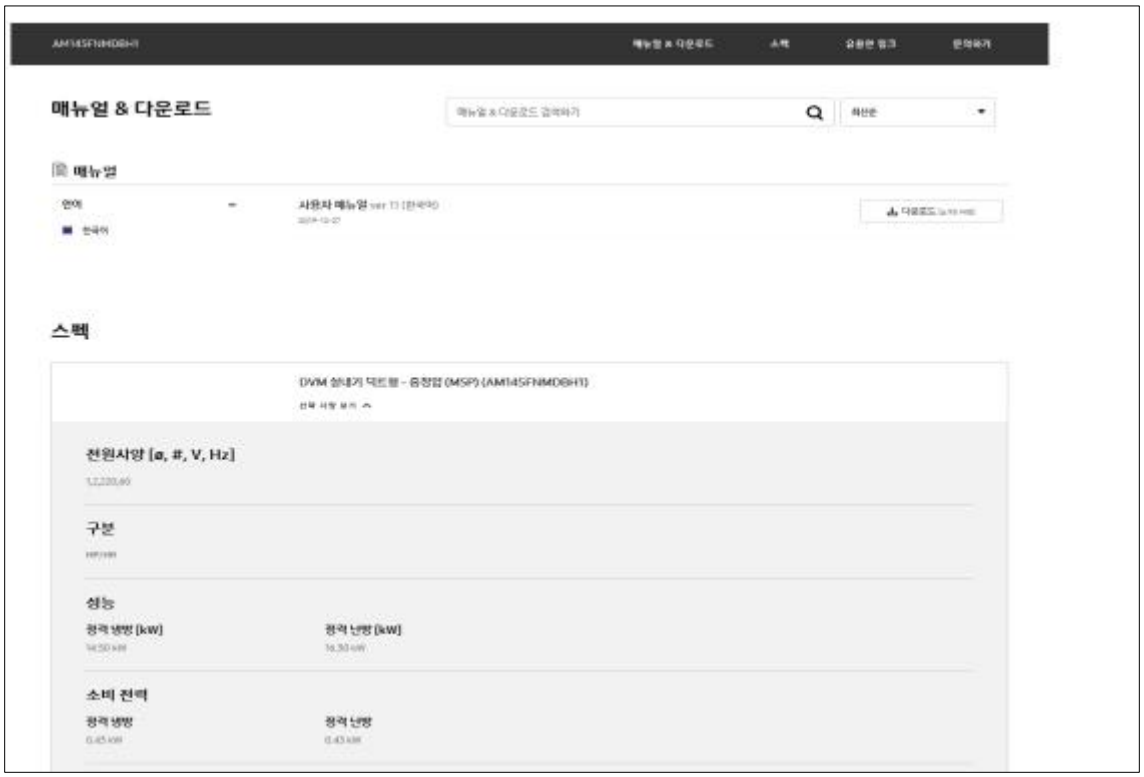
매뉴얼 & 다운로드
매뉴얼
스펙
전원사양 [ø, #, V, Hz]
구분
성능
정격 냉방 [kW]
정격 난방 [kW]
소비 전력
정격 냉방
정격 난방

13. 강사 프로그램 운영표

14.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자료: 2020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6. 8. 3.>

관리위탁 원가계산서

(단위: 원, %))

비 목 \ 구 분			금액	구성비율	비고
지출원가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소 계(A)			
	경상경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도서인쇄비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B)			
	공과금	세금, 공과금 보험료			
		소 계(C)			
일반관리비*(D)[(A+B+C)×( )%]					
이윤**(E) [(A+B+C+D)×( )%]					
총 지 출(F=A+B+C+D+E)					
수입원가	입장료 · 이용료				
	사용료				
	기타수입				
	총 수 입(G)				
총 원 가(F-G)					

유의 사항

* 일반관리비율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100분의 5을 초과하지 못함.
** 이윤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